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25. 7.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1. 심사 의안 ····· 1

2. 심사 일정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

가. 구성경위 ····· 2

나. 활동경과 ····· 2

다. 회의경과 ····· 3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5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8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8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 9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9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10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 15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56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57

5. 종합의견 ····· 58

6. 첨부자료 ····· 64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부 록>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심사경과보고서

2025. 7.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1. 심사 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2. 심사 일정

가. 임명동의안 제출: 2025. 7. 4.

나. 임명동의안 회부: 2025. 7. 7.

다. 상정 및 청문 일자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5. 7. 14.) 상정

제2차 위원회(2025. 7. 21.) 인사청문회

제3차 위원회(2025. 7. 22.)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가. 구성경위

○ 2025. 7. 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5. 7. 7. 동 동의안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2025. 7. 7.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7인): 이재정, 민형배, 김준혁, 박지혜, 이건태, 정준호, 진선미 위원
- 국민의힘 소속(5인): 장동혁, 서범수, 우재준, 유영하, 조배숙 위원
- 비교섭단체(1인): 최혁진 위원

○ 2025. 7. 14.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이재정 위원(더불어민주당)
- 간 사: 민형배 위원(더불어민주당), 장동혁 위원(국민의힘)

나. 활동경과

○ 활동기간: 2025. 7. 4. ~ 7. 22. (19일 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2025. 7. 4. ~ 7. 13. (10일 간)

- 제1차 위원회(2025. 7. 14.)

○ 인사청문회 실시

- 제2차 위원회(2025. 7. 21.)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제3차 위원회(2025. 7. 22.)

다. 회의경과

○ 2025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함.

○ 7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 7월 21일 제2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 위원장의 인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의 선서 및 모두발언에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로 5분)를 실시한 후,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위원별로 3분), 재추가질의(위원별로 3분) 및 재재추가질의(위원별로 3분)를 실시함.

○ 7월 22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한 심사경과보고서(안)대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경과

차수	일 시	의사일정	심사경과	장 소
1차	2025. 7. 14. 09:3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선임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 ○ 간사 선임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 -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제3회의장 (본관 245호)
2차	2025. 7. 21.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위원장 인사말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김상환) 선서 및 모두발언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김상환)에 대한 인사청문 -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 5분) -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위원별 3분) - 후보자에 대한 재추가질의(위원별 3분) 및 재재추가질의(3분)	제3회의장 (본관 245호)
3차	2025. 7. 22. 10:30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회의장 (본관 245호)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단위: 건)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무소속)
1,108	374	731	3

(2) 대상기관별 요구·제출 현황

(기관명 수,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	감사원	8	7	-	1	- 확인 불가
2	경찰청	58	32	26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 - 비소관사항
3	고용노동부	22	22	-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1	-	-	
5	공무원연금공단	8(11)	11	-	-	
6	관세청	35	31	4	-	- 비소관사항
7	교육부	57	39	3	15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8	국가인권위원회	3	3	-	-	
9	국무조정실	3	-	3	-	- 해당자료 부존재
10	국민건강보험공단	23(24)	23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1	국민권익위원회	11	11	-	-	
12	국민연금공단	15	12	3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13	국방부	41(37)	36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4	국세청	105	84	11	10	- 비소관사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15	국토교통부	67	49	15	3	- 해당자료 부존재
16	국회사무처	1(5)	2	3	-	- 해당자료 부존재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7	근로복지공단	3	3	-	-	
18	금융감독원	51(52)	10	42	-	- 해당자료 부존재
19	금융위원회	1(2)	1	-	1	- 해당자료 부존재
20	농림축산식품부	13	5	6	2	- 비소관사항
21	대법원	183(190)	190	-	-	
22	대한적십자사	4	3	-	1	- 해당자료 부존재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1	-	-	
24	법무부	63(48)	21	27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5	병무청	27(31)	23	2	6	- 확인 불가
26	보건복지부	5(3)	2	1	-	- 해당자료 부존재
27	부산광역시	4	2	2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28	서울대학교	1	1	-	-	
29	서울특별시	8	4	-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0	언론중재위원회	1	1	-	-	
31	외교부	12(7)	7	-	-	
32	울산광역시	4	3	1	-	- 해당자료 부존재
33	의정부시	4	3	1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4	인사혁신처	10(3)	3	-	-	
35	제주대학교	5	5	-	-	
36	재외동포청	- (2)	2	-	-	
37	제주특별자치도	4	4	-	-	
38	주택도시보증공사	1	1	-	-	
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	21	1	-	- 해당자료 부존재
40	통일부	2	2	-	-	
41	한국거래소	2	-	1	1	- 해당자료 부존재
42	한국도로공사	1	1	-	-	
43	한국연구재단	2	2	-	-	
44	한국은행	14(15)	-	4	1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45	한국토지주택공사	2	2	-	-	
46	행정안전부	31(33)	24	9	-	- 비소관사항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7	헌법재판소	169(183)	170	13	-	- 해당자료 부존재
합 계		1,108 (1,115)	880	178	57	

※ ( )안의 숫자는 요구받은 기관에서 재분류하거나 이첩(타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받은 건수)된 자료의 건수로, 이를 토대로 제출·미제출 건수를 계산함.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서 476건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5인)	민형배	박지혜	이건태
	정준호	진선미	
국민의힘(5인)	장동혁	서범수	우재준
	유영하	조배숙	
비교섭단체(1인)	최혁진		

※ <부록>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김상환) 서면질의답변서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구두질의요지서 (6인)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3인)	민형배	박지혜	이건태
국민의힘(3인)	서범수	우재준	유영하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물이 해당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의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이 그 이념 및 규정에 맞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임.

○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기관의 장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 및 재판관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하는 중요한 직책임.

○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과 책임성 등을 겸비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가치 및 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지, 공정하고 균형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람.

○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내실 있고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림.

○ 오늘 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게 된 것은 저에게 과분한 영예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부족한 저를 드러내어 헌법재판소장을 감당할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받는 청문회의 무게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기도 함.

○ 저는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2024년 12월 27일 대법관의 소임을 마치고 퇴직할 때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을 법관으로 봉직하였음.

○ 돌이켜 보면, 제가 법관으로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툼의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과 변론을 듣고 각각의 의미와 무게를 저울질하며 판단하는 동안 실은 제 자신이 사람과 세상을 알고 배워 왔다고 생각됨.

○ 제가 법원을 떠나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4년은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음.

헌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법률의 정당성 여부를 연구·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헌법재판관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판단을 지켜보면서, 저의 관념 속에만 자리 잡고 있었던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깊이 실감할 수 있었음.

○ 법원 재판의 헌법적 의미를 새김에 있어서도, 대한민국헌법 제101조가 정한 '사법권의 실현'이라는 점에 저의 시선이 주로 머물러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서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제도가 마련된 것임을 보다 무겁게 의식하게 되었음.

○ 이후 제가 법관의 소임을 마칠 때까지 짧지 않은 기간 일하면서 그러한 교훈과 관점을 모든 재판 과정에서 구현하였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엄격하지만 넓고 따뜻한 헌법의 시선으로 재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으려 하였고, 법정에서의 절실한 호소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귀담아 듣고 최종 판단에 이른 이유와 사정을 소상히 밝히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다는 점만큼은 말씀드림.

○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서로 관할을 달리하며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은 같다고 생각함.

○ 만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헌법의 정신이 국민의 삶 모든 곳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과 저의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함.

○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음.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하였음.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하였음.

○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나마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 저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으며,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음.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음.

○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저는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음.

○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하였고, 규정 하나하나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으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음.

저는 이를 떠올리면서 헌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겠으며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하여 헌법을 이해하겠음.

○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히고 개방된 시각으로

헌법을 바라보겠음. 헌법정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미래 세대 역시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 명의 헌법재판관인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재판소장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나 낮은 자세로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살피고 듣겠음.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소임을 다하겠음.

○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말씀해주시는 다양한 조언과 질책을 가슴에 새겨,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음.

○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림.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1)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소신과 자질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후보자에 대하여는 법조계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평가가 있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지명이 타당하다고 보임.	○ 향후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음.
○ 후보자를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하는데 동의하는지?	○ 그렇게 평가받고 있음.
○ 탄핵 기각이 많았지만, 소수의견이 있는 등 단순히 기각되었다 해서 탄핵심판청구가 의미 없지는 않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 하여 진보성향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이고, 헌법재판의 경우 국제인권 수준의 기본권 보호를 따져보는 전문성이 필요함.	○ 국제인권법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보편적 가치를 배워야 함.
○ 인권의 실효화를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다고 보이고 별건구속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이라는 판결을 하였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 보호 판결도 한 걸 보면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중심 판결,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약자 보호의 판결 의지가 있다고 봄.	○ 감사함. 합리적 범위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자 하였음.
○ 후보자는 2024년 12월 대법관 임기	○ 근무 인연이 있던 교수님이 제주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를 마치고 제주대 교수로 지내다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됨. 제주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에 계셔서 권유하신 바 있음.
○ 보통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 로펌이나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상례인데, 대학으로 감. 당시 상황은 대통령 탄핵 등 여러 정치적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 상황을 예상하여 대학으로 간 것은 아닌지?	○ 과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 선택지가 없었음.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의 지명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관련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켜야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명심하겠음.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본인의 처신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좌우된다는 점을 명심하겠음.
○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의견을 낸 것이 인연이 된 보은 및 청탁인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었고,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의 결과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 그런 의견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경계하겠음.
○ 후보자를 향해 청탁인사, 보은인사라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그동안 헌법과 법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려 노력해 왔음.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수호, 국가권력의 견제 역할을 함. 재판관도 삼권에서 3명씩 구성되도록 한 것은 권	○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력 간 상호견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현재 헌법의 의미임.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무너짐. 진보우위의 상황임.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 현 대통령 무죄판결을 하여 보은인사 의혹이 있음. 앞으로의 사건을 청탁하기 위한 방탄인사라는 지적임.	
○ 1948년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제정하였음. 제가 역사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헌법기초위원회가 대한민국 국호를 정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헌법기초위원회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니, 헌법재판소장께서는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것임.	○ 알겠음.
○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 진행도 중요하나 국민의 기본권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람.	○ 오랜 기간 축적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고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생각함.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음.
○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 대부분 동일하지만 전부는 아니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중진의원으로서 후보자와 장관으로서 후보자가 동일인이냐고 물으니 정신적·사회학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후보자는 동일한지?	헌법재판소가 개척한 논리가 있음.
○ 후보자의 판결을 보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지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사건이 있었음. 특히,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판결들이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보는지?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림.	○ 말씀을 귀하게 잘 들었음. 해당 판결은 이후에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한 개정된 양형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판결이었으나, 당시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었음.

(2) 헌법재판소의 구성·역할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살펴보면,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의원회에서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나, 국회, 대법원, 대통령의 몫이 각각 있어 의지를 가지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 구조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과의 임명 절차를 다르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공부하고 들은 바에 따르면 헌법의 광범위한 규정 해석에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으므로 삼권 각각의 작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생각됨.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차이를 둔 이유는 대법원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취지가 있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그런 면이 있다고 봄.
○ 헌법재판관 물망에 오른 사람 중 과거 대통령 사건을 수행한 변호인이 언급된 바 있는데, 알고 있는지?	○ 언론에서 들은 바 있음.
○ 헌법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출신이 다수라는 지적을 들은 바 있는지?	○ 들은 바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4명이 특정학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음.
○ 헌법재판소 탄핵의 기준은 정치적 부분보다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법원 판결과 달리 탄핵심판에서만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 아닌지?	○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임.
○ 탄핵심판을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탄핵심판권을 이관하자는 주장도 있음.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였음. 당시 인용한 사유 중에는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유도 있었고, 탄핵심판 결정문에 모호한 정치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권을 대법원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을 자초함.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 법리로 재판하고 있어서 대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전 정권이 검찰을 이용한 정치를 하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되었는바, 정치의 사법화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그 이유가 있음. 대통령 뜻에 따라 검찰권으로 정적을 제거한다면 사법부도 정치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시민통제가 필요하므로, 기소시민배심 및 영장시민배심 등이 필요함. 현재 검찰 공소장의 공신력은 민사 준비서면 수준으로 떨어짐.	○ 정치적 문제가 사법의 영역으로 오는 것에 기인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치와 사법영역에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권이 비대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참여재판 확대 등에 대해 지지하고 있음.
○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법의 정치화는 이미 진행되었다고 생각함. 후보자는 전 대법원장 시설 대법관도 하였고 법원행정처장으로 법원의 정치화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봄.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여러 우려 제기하는 것임.	○ 알겠음.
○ 우리법연구회 등 출신인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청탁, 보은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판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지? 정치적인 공격인데, 명확히 입장정리해야 함.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	○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림. 그리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하나는 소수자 보호임. 헌법재판소만큼은 다수결에 부합하는 법 감정, 시기상조로의 회피보다는 때때로 소수자 보호를 위한 결정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음.	○ 공감함. 헌법 논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있고,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따로 덧붙일 의견은?	○ 해당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논쟁의 결과라고 생각함.
○ 정당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음. 정당의 정치적 생명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관련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원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함.
○ 헌법재판관 다양성에 문제가 있음. 현재 헌법재판관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고, 역대 헌법재판소장을 보면 한 분이 서울이 정치학과 출신이며, 나머지는 모두 서울대 법학과 출신임. 대법관과 다르게 헌법재판관은 법관 출신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임.	○ 다양성과 관련해서 미흡한 건 맞다고 생각함. 법관 출신으로 제한한 것이 다양성 확보에 장애인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아동, 장애인 등의 인권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생각하는 바가 매우 중요함.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고민하는 법조인, 학자들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 기본적으로 적극 공감함. 헌법연구관일 때 여야 정치인들이 1기 재판관이었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 있음. 그 분들께서 논증의 풍성함, 생각의 다양함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함.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함.
○ 헌법재판소법은 180일 이내 사건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년 이상 경과된 사건도 있는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 숙고한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 사건이 양적으로 많기도 하고, 선례가 존재하지 않은 사건들을 접수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음.
○ 사건처리기간 관점으로 보면 차라리 현실감 있게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평균 사건처리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봄. 당사자로서는 예민한 문제인데, 후보자의 정책적 고민은?	○ 180일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보다는 후자의 방법을 고민해야 함. 재판소의 연구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선례가 있고 비교적 명쾌한 사건은 4명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장기 미제 건수가 높음.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데, 사건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감. 맞는지?	○ 그러함.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 잘 알고 계실 것임.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하면	○ 명심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스스로 정치적 집단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헌법재판소는 3년 동안 결정을 지연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으면 존속할 수 없음. 명심하길 바람.	
○ 헌법연구관의 이직이 많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헌법재판에서 헌법연구관의 역할이 큼. 원인을 잘 분석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3)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개헌 관련>	
○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은 조선시대 4대 법전임. 영조시대에 편찬된 속대전을 정조가 40년도 안 되어서 다시 대전통편으로 편찬한 이유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이었음. 많은 국민이 1987년 헌법 체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 1987년 헌법 체제가 마련된 이후 헌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보다 풍성하고 깊어졌다고 생각함. 그에 기초한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봄.
○ 조선시대 4대 법전(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이 법전들 이름의 공통점을 아시는지? 공통적으로 '대'자가 들어가 있음. 그러면 왜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음. '대'의 크다라는 의미는 포용의 의미, 아우름의 의미가 '대' 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함. '헌'은 단순한 '법 헌'이 아니라 '깨달을 헌', '깨우칠 헌', '가르칠 헌'임. 이 법을 통해서 함께 인류공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임. 그래서 헌법에 세계평화,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1948년 헌법 제정자들	○ 의원님의 말씀으로 처음 들어보았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토대로 책임감을 갖고 전문을 검토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헌법 전문에 문화를 창달하고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큰 의미를 담은 것이라 생각함.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함.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속에서 국제법, 세계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런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번 전문을 강조하는 이유는 헌법 전문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많은 고심 끝에 만들어졌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많은 시민들의 열망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임. 더 나아가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5·18 정신을 헌법에 꼭 담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헌법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헌법 전문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5·18 시민항쟁의 정신 계승,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정신 계승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 헌법 전문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관점이나 철학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헌법 전문에 수록된 사건들과 같은 맥락의 사건들은 여러 국민의 공감대 하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함. 동학농민운동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으나, 5·1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과 유사한 정신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음.
○ 대한민국헌법과 외국 헌법의 근본적	○ 우리나라 헌법은 보편적 가치를 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하고 있고, 국민권리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보편적 권리 규정이 있다고 생각함.
○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올라갈 정도로 가치 있는 사건이라 하였는데, 이를 왜곡하는 부정세력에 대응하는 헌법적 방안은?	○ 구체적 대안은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으나, 1980년 이후 5·18의 진실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 옴.
○ 4·19 연장선에서 공통적으로 5·18의 헌법전문 수록 가능하다고 함.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 언급은 어떤 의미인지?	○ 헌법 전문의 정신이 그 이하 헌법 조문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음. 규범력은 약하더라도 제정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임.
○ 헌법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헌법재판이고, 몇십 년의 헌법재판소 역사를 통해 기본권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추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 헌법재판소를 떠난 지 15년이 되어 잘은 모르지만, 기본권에 대한 다양하고 보편적인 연구들이 있다고 봄.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논의와 결정들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관련 개헌 논의가 적절한 주제라 생각하는지?	○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논의해야 할 주제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음.
○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이나 중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 우리 헌법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에 있어 지금 헌법이 그런 것이고 개헌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	○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 자리에서 들어서 즉답하기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각은?	
○ 헌법 정신에 있어 지금 대통령에게 개헌되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당시에 명시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개헌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음.
○ 반대로 현행 대통령이 그것을 어기고 개헌을 통해서 연임하려고 하면 순수성이 침해될 수도 있지 않은지? 일정 부분 부적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지?	○ 그런 시각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임.
○ 1987년 헌법개정에 있어 헌법적 결단은 어떤 경우에도 현직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헌법 결단을 무시하고 이 조항을 빠뜨리는 것은 헌법을 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함.	○ 이론적으로는 종전 헌법의 수정이 가능할 것임.
○ 헌법 제128조제2항은 현직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 조항의 헌법개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인적 효력에 제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바, 이 조항이 개정될 경우 그 효력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현행 헌법 개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움.
○ 헌법 제128조제2항을 둔 취지는 독재 타도를 위한 국민적 결단임. 학계의 다수설에 따르면 헌법 제128조제2	○ 해당 조문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항을 개정하여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유는?	○ 4·19민주이념이 헌법전문에 실린 것과 유사함.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 많은 희생, 진실을 위한 노력 등 45년 동안 국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전문에 넣는 게 맞다는 생각임.
○ 기본권에 대한 변화가 많아 30년 동안 헌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음. 기본권에 대한 개헌 필요성이 큼.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헌법 제34조제5항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은 인권기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후보자의 생각은?	○ 의원님과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
○ 1987년 6·10항쟁의 결과인 제9차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존재함. 현행 헌법에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특정사건을 염두에 둔 건지?	○ 대학시절이 1984년부터 시작함. 그 이후의 6·10항쟁, 동기의 죽음 등을 선명하게 기억함.
<사법제도 관련>	
○ 대법원이 사법의 정치화를 유발하고	○ 본인이 심리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극히 빠르게 진행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임명권자에게 충성하는 등 개인적 인연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대법원 판단에 대해 본인이 평가하기 적절치 않음.
○ 법조계에서도 파기환송심에 대해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고 전국법관회의도 열림.	○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온 바 있음. 판결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
○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을 보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이 심각할 수 있다고 언급된 바 있음. 후보자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의식하고 주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위 판결의 소수의견과 같은 취지인지?	○ 그러함.
○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현 대통령 재판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하니 민주당이 대법관 탄핵,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소추 중지 등의 주장을 함. 이에 대해 사법부는 아무 대	○ 판사들의 경우 재판 이외 현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며,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은 있을 것이라 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응도 못함.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해도 되는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음. 물론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함. 최근 재판 지연으로 변호인들과 당사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여 탈권위를 주장하였지만, 사실상 사법부의 근간을 훼손하였다는 평가도 있음. 후보자는 사법개혁에 반대하였는지?	○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에 반대한 바 없음.
○ 사법절차 지연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 및 변호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실패한 사법개혁이라 생각함. 후보자가 이 부분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면 동의를 하셨다는 것임. 국민적으로는 사법개혁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책임이 있는 분이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되신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대법원장이 추진한 여러 정책은 그 당시 역사적 사명에 맞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함. 어쨌든 취지와 다소 방향을 달리하여 재판지연이라는 상황이 생긴 것에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죄송하고 적시에 철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함.
<재판소원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근 제기된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4심제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재판소원제도의 채택 여부는 국민과 국회가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함.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는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제도 도입에 따른 장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고,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대통령의 판결에 대하여도 재판소원이 가능할 수 있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공정한 결정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후보자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법조계의 논쟁이 있었음. 최근 법안 발의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나, 장단점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함.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다수당이 여당이라면 최대 5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추가로 한 명만 호의적이면 6명으로 다수 의견을 점할 수 있음. 이러한 정치적 구성원리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헌법재판소법에 없는 극히 예외적인 한정위헌으로 인한 재판소원을 두고, 이미 재판소원이 이	○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고 논의가 있음. 지난 37년간 지명권자와 무관하게 헌법 해석의 전문기관으로서 신뢰를 구축했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됨.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후보자의 생각은?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가능성 확장 취지에 대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현실적 단점들을 함께 고민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 재판소원 제도화와 관련한 우려의 입장은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의 소송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구제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부당한 문제에 대해 억울함을 풀어줄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람.	○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물들을 잘 검토해서 국회에 제시하겠음.
○ 재판소원 도입에 대하여 과거 후보자는 한결같이 심급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반대했는바, 지금은 그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답변함.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생각과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법관으로서의 견해는 법체계 내 해석론이었고, 지금 국면은 정책론으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개헌사항인지 아니면 국회입법사항인지의 문제가 있는바,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선명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 없고 이 정책이 국민 관점에서 어떨 것인지에 주목해야 하고, 국민기본권 구제의 종착지에 대한 논쟁임.
○ 재판소원의 경우 심리지연의 우려를 극복해야 하는바, 그간 헌법재판 사	○ 단기적으로는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부의 역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건 심리와 관련한 통계를 보면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이 180일을 초과하여 신속 재판과 동떨어진 현실 같은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현재 헌법연구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을 강화하는 등 국회와 상의해서 대처할 것임.
<대법관 증원 관련>	
○ 최근 10년간 대법관 초임지를 살펴보면, 44.1%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초임이었음. 특히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의 경우 56.5%임. 대법원의 엘리트 선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됨. 대법원의 엘리트주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음. 구성원의 다양성 필요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함.
○ 현 대통령 재임기간 내 대법관 30명 증원하면 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16명이 됨. 증원 필요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늘릴지, 언제 늘릴지 매우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정치화되고 신뢰를 잃을 것임.	○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서는 심급제도 재설계가 중요하다고 봄. 1심법원의 양적 확대, 질적 개선이 필요함.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한다고 봄.
○ 대법관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인데, 대법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관 30명을 한 번에 증원하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생김.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 전 헌법재판관께서 이번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된 건 5·18 정신, 6·10 항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	○ 전 헌법재판관의 말씀에 공감함.
○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존중함.
○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행위라 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음. 후보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후보자는 탄핵심판 결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 계엄선포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재판관 각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공정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음.
○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과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 동의함.
○ 최근 3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1건, 본회	○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가 되면 그에 대해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에서 가결된 건은 13건임. 탄핵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음.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 헌법 제65조제1항의 규정과 달리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치환시켜 증거도 없이 탄핵을 남발함. 헌법학계에서는 무고한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후보자의 의견은?	답변하기 어려움.
○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상기되었고, 헌법재판에 대해 묻는 국제기구도 많았으며, 헌법재판 제도가 인류 공통의 이성과 국제인권법에 발맞추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준비상황은?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헌법재판의 수요가 있는데, 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기관의 책무라 생각함.	○ 헌법재판소가 사법외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보편적인 인권가치를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교류하였는바, 상황을 잘 살펴서 의미 있게 해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당시 최우선으로 관	○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련 사건을 심사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국민의 우려를 초래한 바 있음. 향후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음.	
○ 탄핵심판 과정에서 1달 넘게 평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언제 선고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했음.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만장일치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이 답답해 했는데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 변론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면 예측가능성을 높였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재판관들과 충분히 상의하겠음.
○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하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였음. 경제에 악영향도 있었음. 국민들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함. 헌법적 가치 하에서 판결이 나와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큰 우려임.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세울 수 있어야 함.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감함.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늘 의식해야 함.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등과 상의하여 고민하겠음.
○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석방	○ 해당 판사의 법률 해석 결과라고 생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한 판결이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인지?	각함.
○ 전 대통령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총장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검찰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 즉시항고를 해서 관련된 해석을 해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음.
○ 검사 탄핵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고등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기록을 보내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한 한 상태로 심리가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는 위법성은 적지 않다고 하면서도 파면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함. 증거 제출여부를 검찰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음. 개인정보는 보호조치를 한 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길 바람.
○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결정문을 정독하지는 않았음. 그런 이해도 가능하다고 봄.
○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상의 직무가 정지됨. 탄핵이 각하 또는	○ 개헌론까지 포함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가 직무정지에 대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기각되는 사유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소추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봄. 정책적인 의견임.
○ 일반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는 검사는 파면 제도가 없음. 검사가 사기죄를 범해도 검사징계법에 파면제도가 없어 파면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탄핵을 할 수 없다고 함. 이는 큰 문제 아닌지?	○ 확정판결 전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자료를 받아서 탄핵심판 취지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사, 모두발언에서 기본권을 강조하였음. 헌법의 핵심적 가치가 기본권 보호에 있다는 뜻으로 보임. 현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가 제한됨. 해외사례를 보면 교원의 정당가입을 막은 나라가 거의 없음.	○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교원이 가입할 수 있는 정치단체의 포괄성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음.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도 무겁게 봐야 함.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봄.
○ 교사의 정치적 활동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교실 안에서 학생들을 향해서 여과 없이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음. 투표권이 있더라도 교사의 발언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학생	○ 정치적 중립성과 기본권을 교량할 때 이 경우 중립성을 앞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교실 밖에서 개인의 활동으로는 의사표명이 가능하다고 봄.	○ 정치적 중립성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후보자가 진보적 이슈의 대답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에서는 정치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교사가 의원으로서 정치참여가 많은 직업군임. 이에 대해 들여다 봐야 하고, 공적 지위 외의 활동은 정치적 자유 안에 포함됨. 사회권이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도 헌법의 해석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경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국회 또는 국민적 합의로만 미루어서는 안 됨.	○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데, 다만 현실정치의 문제가 표현의 경계에서 넘나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임.
○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 루소에 따르면 사람은 2번 태어나는데, 민주시민으로 제2의 탄생을 함. 여기서 민주시민의 핵심은 정치적 자유로, 대학교수는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 교사들에게만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 가르치는 대상의 차별성에 주목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언론의 자유 관련>	
○ 후보자는 법관 재직 시 한 기자의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하여 2심에서 무죄판결한 적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걸로 보이는데 언론의 자유를 너무 폭넓게 인정한 건 아닌지?	○ 그 사안에서는 명백한 허위의 표현이 문제된 것은 아님. 뚜렷한 허위사실이 전파되는 경우 공정성의 가치가 표현의 가치를 상회한다는 생각임.
○ 그 기자의 허위사실유포 관련하여 2심에서 무죄판결을 한 것은 언론인으로서 충분한 취재를 거쳤고 의혹을 제기할 만큼 나름의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함.
○ 헌법적 사건에까지 왜곡을 시도하는 언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맞는지?	○ 다소 제한될 수 있겠으나 표현의 자유 측면을 봐야 함. 토론을 먼저 하고 제재는 그 뒤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음.
○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고 선거 관련 판결을 해 온 것으로 보임. 소수자 혐오 방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유럽 등에서는 그 한계를 지적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도 발언을 주저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보임.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각별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를 존중함. 5·18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적 발언이나 언론 보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곡된 의도를 가진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왜곡된 의도를 가진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명확한 헌법적 한계를 설정해주길 바람.	○ 뚜렷한 역사적 사실은 공감의 여지가 많음에도 왜곡의 의도가 있다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함.
<기후환경 관련>	
○ 지구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연환경,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이상기상현상이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가 우리가 처한 새로운 헌법적 현실임.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에 대해 학계에서는 국가의 의무조항이다라는 입장,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는 입장, 구체적인 효력을 가진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음. 후보자의 입장은?	○ 조심스럽지만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인식하기에는 부족한 헌법규정으로 보임. 다만, 지난 기후변화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존 입장보다 제35조제1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UN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2천여건이 넘는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헌법 현실을 감안하다면 우리나라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헌법 제35조를 들어 환경권 보장 취지의 새로운 소송이 계속 제기될 수 있고, 후보자가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함. 헌법 제35조에 근거한 지난번 기후변화사건에 기초해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 헌법이 새로운 헌법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환경권 범위확대 및 강화, 미래세대 보호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및 환경권과 별도로 자연의 고유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깊이 있는 견해가 없어서 죄송함. 환경권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겹치기는 하지만, 말씀해주신 취지를 잘 살피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 일제강점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2018. 10. 30에 있었는데, 외교적 문제로 문제 해결에 관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한참 후인 전 정부에 들어와서 제삼자 변제 방식이 논의된 것임. 제삼자 변제는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논의된 것으	○ 판결의 이행으로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는 것과 직접 이행하는 것 중 민법적으로 어느것이 맞는지가 쟁점이라고 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 볼 수 있는바, 제삼자 변제에 대해 판결의 효력 부인을 전제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제삼자 변제와 관련하여 가치중립적인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음. 판례나 법률의 규정에서 먼 얘기를 하는 듯함. 민법 제469조에 채무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경우 제삼자 채무배상 쉽지 않음. 주류 견해와 달라서 말씀드림.	○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가지고 있음. 다만, 대법원이 사건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앞두고 있기에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 사건의 쟁점만 말했다고 말씀드림.
○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대위 변제가 문제가 없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음. 윤석열 정부에서 제삼자 대위 변제로 배상이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민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앞서 언급함.
○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대위 변제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 민법상 해석의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음.
<북한 주민의 지위 등 관련>	
○ 헌법상 북한에 있는 주민도 우리나	○ 헌법 해석상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라의 국민인지?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도 기본권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각하나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도 고려해야함.
○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 탈북민에 대한 대처가 헌법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음.
○ 국회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 기본적으로는 탈북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와 함께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도 고려해서 생각할 문제임.
<금융범죄 관련>	
○ 주가조작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잘 아시는지? 관련된 판결은 많이 해보셨는지? 경제범죄 주가조작에 대해 후보자의 판결 형량은? 실형 선고는 하셨는지?	○ 경제부 재판을 해서 접해 보았으나 드문 사건임. 주가조작 범죄는 자본시장 교란 범죄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음. 사건 자체는 떠오르지 않음.
○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범죄가 어떤 부분에서 반헌법적인지?	○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의 공정성을 믿고 거래하는 것인데, 시장의 객관적 공정성을 흔드는 범죄인 점에서 반헌법적임.
○ 최근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들이 탄핵 재판을 받았는데, 헌법	○ 그런 결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재판소 판결문 중 적절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의문이 있다는 해당 결정문을 본 적 있는지?	
○ 최근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수사해서 필요하다면 구속해야 하지 않는지?	○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해 즉답하기 어려움.
<사면 관련>	
○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 제79조에 적시되어 있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은 사면권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은 사회를 통합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사면은 일정 부분 사법부의 한계라든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있다고 봐야 함.	○ 그러함.
○ 사면권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란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사면을 불가하게 하는 입법 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헌법가치에 사면권이 있는 목적에는 부합되는지 정도는 말씀해 주시길 바람. 수동적 답변보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답변 바람.	○ 사면이 헌법 취지에 부합되는 목적하에서 조심스럽게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본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가능한지?	○ 추상적인 질문에 추상적으로 답변한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려워 보임.
○ 내란죄와 외환죄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과 법안이 있는데, 헌법상 위헌성이 있다고 보는지?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 논의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 의견 말하기 어려움. 사면권은 별다른 제한 없이 대통령에 헌법상 유보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함.
<기타 현안 등>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인용비율은?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판단되고 있음. 낮은 비율이라고 알고 있음.
○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도적으로는 들어와 있으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면 후보자의 헌법적 관점에서의 대안 제시는?	○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 어려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 비율이 낮은 원인은 따져 보아야 하지만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형사재판 전 과정이 포함되므로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함.
○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사유는 제자논문 표절, 전문성 부족 등임. 제자논문 표절은 대표적 갑질행위에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음. 이 사유로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 기본권, 민주주의 방향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봄. 별도의 언어 전문학자의 도움을 받거나 시스템적인 변화를 고민해주시길 바람.	○ 깊게 공감함. 그동안 고민을 확인해서 시도하도록 노력하겠음.
○ 법원에서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는데 국방부가 상고하였는바, 헌법의 세계평화와 국제법 존중,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에 어긋나고, 군인 관련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봄.	○ 국가권력과 시민 간 다툼에 대해 국가는 상고를 절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숙지하진 못하였음.
○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계엄령으로 반헌법적 법률이고, 독재를 위해 악용되었으며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가보안법은 나름의 의미가 있음에도 정치적 생각이나 관점에 대한 형사적 제약으로 기능하였는바, 국가보안법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함.
○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반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려 했는데, 5.18 등과 연관하여 어떻게 답	○ 그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변할 것인지?	
○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사형집행이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데 국가의 기본책무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는 것으로, 형벌의 위하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다수 국민이 사형집행 없는 것을 부적절하게 보고 있고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데, 사형제가 합헌이라 보는지?	○ 헌법재판소에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라 답변하기 어려움.
○ 동성결혼에 대해 후보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지지한다고 하였지만,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 입장이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상충되는 것 아닌지?	○ 해당 대법원 판결은 동성결혼 금지의 본질을 침해하는 건 아니고, 단지 차별을 지적한 것임.
○ 대법원판결이 모순인 것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그치지 않고, 법적 배우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쟁으로 확산될 것이며, 판결문을 보니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고도 함. 그런데 외국학자들이 과거에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에는 해당 유전자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성	○ 과학적 연구결과는 모르겠고, 성적 지향의 문제는 긍정·부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적 지향이 타고난다는 결론에는 문제가 있음.	
○ 헌법기관 등 국가기관의 지역 이전이 가능한지?	○ 가능할 수 있음.
○ 헌법이 수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수도 이전 여부는 입법적 영역인지?	○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반된 내용이므로 생각이 필요함.
○ 허위 왜곡 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지?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제재 수준이 강력하지 않았으면 함.
○ 도서정가제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정당한 수단인지?	○ 그렇다고 생각함.
○ 국민참여재판 시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판결은 납득할만한 반대의사 없는 한 존중되어짐. 전 교육감 사건에서 2차례의 허위사실 공표 중 2번째 의사표시(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상대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를 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의문임.	○ 양형의 이유로 봐서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두 번째 표현의 경우 의사표현의 계기나 경위 자체는 참작할 점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었음.
○ 저출산 문제 관련하여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고 다문화주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유럽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있음.	○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함. 다만,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소 차별적임. 우리 공동체가 다문화가정에 대해 좀 더 차별적이지 않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다문화주의가 온정적 인도주의가 되어선 안 됨.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국가의 정체성, 공동체의 가치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함.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최근 난민에 대한 혐오 등이 만연화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한 소비쿠폰 지급 여부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함. 난민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세금 납부자임. 일반외국인의 지위와 동등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지원금 수혜대상에 난민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있었음. 잘 알고 있음.
○ 영장 발부 기준이 특검에 있어서 다르다고 보는지? 범죄 사실에 대한 특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관련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특검은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는 사유로 영장 발부 기준이 완화된다고 보는지?	○ 영장 발부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됨.
○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모여서 연구하는 부분이 아님. 중요하거나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결정들에서 해당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판결이 일정한 경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 삼는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람.	○ 유념하겠음.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음. 이에 대한 후보	○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자의 생각은?	
○ 과거 헌법재판소는 공직후보자의 행위 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고, 특정인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해당 사안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대답하기 곤란함.
○ 국회 의결로 정부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고민이 필요함.
○ 탄핵재판 시기 집회에 나가니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고, 군인 가족에게 총을 쏘지 말라는 영상전화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됨. 과거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바 있고, 당시 해산사유에는 회합모의 같은 내적 사유가 많았음. 지금 상황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주요 의원들이 당혹스러운 발언도 많이 했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정당해산에 대한 잣대가 정확해야 하고, 다른 정당해산 심판에서도 통합진보당과 동일해야 함.	○ 알겠음.
○ 최근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들	○ 이 상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었음. 이에 대해 후보자는 옳다고 생각하는지?	치 않음.

(4) 후보자의 도덕성·재산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부동산 투자 내역을 보면 재테크의 달인으로 보임. 누구나 갭투자할 수 있으나 재건축 진행, 예정된 단지만 선별적으로 투자하였음. 지방에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있으면서도 서울에 갭투자를 계속함. 후보자의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지? 대법관 임용 전에 취약계층 구호, 봉사활동이 전혀 없음. 기부금 또한 소액임. 헌법 수호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임.	○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의원님 말씀,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면 겸허하게 생각됨.
○ 대법관 청문회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 지적받았는데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됨. 재건축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파트 매입 시 처가에서 자금을 융통한 근거가 있는지?	○ 처가와는 송금자료가 있음. 첫 번째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음. 두 번째 아파트는 재건축될 것으로 전혀 예상치 못하고 5년간 거주했는데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결정됨.
○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옮긴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봄. 그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으나, 서울시 결정으로 재건축이 되었음.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음?	○ 그러함.
○ 후보자께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실생활	○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진 것인지 의문이 있음. 갭투자,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외에도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았음. 또한 딸의 경우에도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고, 정부에서 근로장학금도 수령하였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혜택을 빼앗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후보자가 약자와의 동행을 말씀하시면서도 경제적 이득 관계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음.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를 위해 신경써 주기 바람.	○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겠음.
○ 후보자의 딸이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민주노총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딸과 후보자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 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대리를 하면 직접적 충돌이 가능하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회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바쁘신 중에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장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음.

○ 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헌법정신의 실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음.

○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의 귀중한 말씀을 잊지 않고 부단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림.

○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헌법이 살아 숨 쉬는 법으로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음.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포용하며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겠음.

○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이 후보자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하셨음. 이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를 대변한 것임을 후보자께서는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람.

○ 만약 국회의 임명동의안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임용이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람.

○ 오늘 긴 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김상환 후보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림.

○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임하시느라 하루 종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 관계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

5. 종합의견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5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김상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답변자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토대로,

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신,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②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역할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③ 재판소원 제도 등 주요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④ 후보자의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등을 검증함.

○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일부 청문위원은

- 후보자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반복적인 매입으로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고, 대법관 임용 이전에는 취약계층 구호나 봉사활동 실적이 미흡하여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 과거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후보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합의가 있었다는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여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

- 후보자의 두 자녀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한 문제가 있고, 약자를 생각한다는 후보자의 그간 언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 후보자를 비롯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여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의 발단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당시 후보자가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지내 법원의 정치화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 후보자가 2020년 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TV토론에서 정치인의 거짓말이 용인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야기하였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현직 헌법재판관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후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에 따른 보은 인사, 방탄용 인사라는 점,

- 대법관 재직시에는 재판소원 도입 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혀 왔음에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변경하여 후보자의 소신이 의심스럽다는 점,

- 대법원 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3배수 추천, 대법원장 제청,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하도록 하여, 국회나 대통령이 의지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

-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제 사건 증가와 심판지연 문제가 심각하여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업무인 기본권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등) 위헌결정의 지연과 같은 사례를 보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일부 청문위원은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 범위를 입법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여 기본권 보장에 강한 의지가 있음이 확인된 점,

- 우리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현행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과정과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감안할 때 추가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가 대립된 상황에서, 재판관 각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공정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를 유심히 보았다고 답변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

- 최근 10년 간 임명된 대법관의 44.1%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초임지로 하는 등,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하지 않아 정권에 순응하는 판결을 내는

측면이 있고, 기본권 수호와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학자 등 비법조인들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 출신 초대 헌법재판관들이 논증의 풍성함과 생각의 다양함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들었다고 답변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구성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명한 점,

- 종래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한하여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보아왔던 것과 달리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 특수고용노동자의 불안한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 등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점,

-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제시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제3자 대위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법 법리적 논쟁은 있으나 유족과 생존자의 입장에서 제3자 대위변제가 상처가 되리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공감의 의사를 나타낸 점,

-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양 기관의 헌법해석을 통일시킬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과, 판결의 확정시기가

늦춰지고 소송 관련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기본권 보장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소신,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

-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없고 당시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른 판결이었으며 자녀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점, 후보자가 1994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약 4년간에 걸친 헌법재판소 연구관 근무 경력으로 헌법 및 법률 이론과 재판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다는 점, 현행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실천의 역사가 있음을 인식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청문회 과정을 통하여 각 청문위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바를 유념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를 당부함.

6. 첨부자료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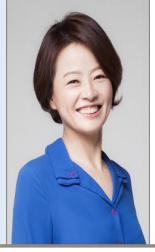
<부 록>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서면질의 답변서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 재 정 (74년생,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20 · 21 · 22대) · 경북대 사법학과 졸업 · (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위원장 직무대리 · (현)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회관 543호 784-2677 6788-7051 F)6788-7055

2025. 7. 7. 현재

더불어민주당 (7)	간 사		**민 형 배 (61년생, 광주 광산구을)** · 재선(21 · 22대) · 전남대 일반대학원 사회학박사 · (전)광주 광산구청장(민선 제5 · 6기) · (전)노무현 ·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 (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회관 534호 784-4777 6788-6426 F)6788-6430
			**김 준 혁 (69년생, 경기 수원시정)** · 초선 · 중앙대 대학원 역사학과 문학박사 · (전)수원시 학예연구사 · (전)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 (전)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 **· (현)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회관 332호 784-2195 6788-7361 F)6788-7365
			**박 지 혜 (78년생,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전)플랜1.5 공동대표(2022.4.~ 2023) · (전)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 (현)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 (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회관 735호 784-3174 6788-6981 F)6788-6985
			**이 건 태 (66년생, 경기 부천시병)** · 초선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 ·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현)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 (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관 833호 784-3143 6788-7466 F)6788-7470
			**정 준 호 (80년생, 광주 북구갑)** · 초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초대법률센터장 · (전)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법무관 · (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관 546호 784-1091 6788-6226 F)6788-6230
			**진 선 미(67년생, 서울 강동구갑)** · 4선(19 · 20 · 21 · 22대) ·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전)여성가족부장관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현)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회관 1002호 784-9591 6788-7326 F)6788-7330
국민의힘 (5)	간 사		**장 동 혁 (69년생,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21 · 22대) · 서울대학교 졸업 · (전)광주지법 부장판사 · (전)원내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사무총장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602호 784-2174 6788-6996 F)6788-7000
			**서 범 수 (63년생, 울산 울주군)** · 재선(21 · 22대)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 졸업 · (전)울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치안정감) · (전)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 (전)국민의힘 사무총장 **· (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회관 410호 784-6277 6788-6581 F)6788-6585
			**우 재 준 (88년생, 대구 북구갑)** · 초선 · 서울대 정치학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 (전)법무법인 이유 소속변호사 · (전)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위원 **· (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회관 617호 784-1511 6788-7306 F)6788-7310
			**유 영 하 (62년생, 대구 달서구갑)** · 초선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전)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전)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 (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회관 620호 784-5270 6788-7321 F)6788-7325
			**조 배 숙 (56년생, 비례대표)** · 5선(16 · 17 · 18 · 20 · 22대) · 서울대 법학 학사, 동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전)서울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전)수원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 (전)제17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606호 784-5711 6788-6946 F)6788-6950
무소속 (1)			**최 혁 진 (70년생, 비례대표)** · 초선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전)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회관 317호 784-9241 6788-6096 F)6788-6100

참고자료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5. 7.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

1. 목　　적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안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일

2025. 7. 21.(월) 10:00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행한다.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있는 경우 신문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국가 안전보장 등)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5조(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심사경과보고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소요경비

인사청문회활동비 및 증인여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8.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은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인사청문회 방청

o 일반방청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라. 질의 중 영상매체 사용

o 위원의 질의 중 음성·음향이 포함된 영상물 사용과 관련하여,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등 출처가 표기된 공신력 있는 매체는 허용하고, 그 외 유튜브 등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1]

의 사 일 정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5. 7. 14.(월) 9:3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2차> 25. 7. 21.(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3차> 25. 7. 22.(화) 10:30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 의사일정, 회의일시, 장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5. 7. 21.(월)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5년 7 월 16 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이 재 정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상환)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

2025. 7.

공 직 후 보 자(김 상 환)

목 차

민형배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

장동혁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52

박지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73

이건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99

정준호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270

진선미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317

서범수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327

우재준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348

유영하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372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422

최혁진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514

민형배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합니다.

○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추가하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과정과 그 정신, 특히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헌신적으로 실천한 것이고 이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뚜렷이 기여한 점을 생각하면, 저는 현행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에 관한 내용처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2.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수배와 학사징계, 해고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제약받아온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 2021년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관련자”로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5 · 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과정과 그 정신을 생각하면, 그 과정에서 희생된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개헌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라는 점에서, 개헌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개헌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헌시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조항이 있다면?

○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고, 개헌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어 온 여러 기본권, 대표적으로 알 권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그동안 다양한 결정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헌법에 내재한 다양한 가치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헌시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기본권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고, 개헌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어 온 여러 기본권, 대표적으로 알 권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 일각에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헌시 헌법재판소 관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라는 점에서, 개헌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헌법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헌법재판을 위해 개헌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도 오랜 기간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조항, 가령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 임기 등에 관한 개정 필요성 등을 꾸준히 연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관하여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또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개헌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되고, 개헌 국면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더 나은 헌법재판을 위한 개헌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개헌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능 분담과 관계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 관련 연구나 논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재판제도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결국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숙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국회 3명, 대통령 3명, 대법원 3명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견해는?

○ 헌법은 대통령이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 대법원장은 국회, 대통령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정책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분립된 입법, 행정, 사법부에 각기 균등하게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깊이 있는 헌법해석과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의 헌법적 정당성 수준을 높이기 전까지, 이러한 헌법 취지를 구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국가균형발전 및 독립성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지역 이전에 대한 견해는?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이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사무처 등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과 헌법학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관련 연구와 논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소추 개념에 대한 견해,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중지된다는 재판중지법에 대한 의견은?

-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음.

-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 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

-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밖에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며, 법원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들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정권에 대한 풍자 또는 해학적 표현이 국가안전보장 사유 등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가?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질서유지의 요청에 따른 공익이 현저한 경우 표현의 자유 또한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제한의 정도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질서유지에 따른 공익 사이의 신중한 비교교량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되는 표현이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의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17헌바42등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제7조 제1항)과 이적표현물조항(제7조 제5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4헌바134) 사건 등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저는 특히 표현에 대해서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엄격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14.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재판관의 자격은 법관의 자격과 연동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도입과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지닌 법조인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화된 법조인들 가운데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의 구성 또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성별, 나이,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 헌법재판소 인사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견해는?

○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16. 관습헌법의 인정여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2004헌마554등). 위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결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충실히 심리하여 내려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로서 위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사법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가장 큰 선결과제는?

○ 30여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구성원으로서 그에 대한 의견이 없을 리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제가 법원의 신뢰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법부에 대한 외부 즉 국민의 시각에 비하여, 저를 비롯하여 법원 내부의 시각은 비교적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좋은 결론을 내는 데 몰두하여 재판에 이르는 절차나 과정의 정의에 둔감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선결과제는?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 헌법재판소가 주권자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방안은?

○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 교육, 토론 등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헌법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통해 이러한 시민의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소통한다면,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 대한민국 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보장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의 위헌적 요소들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 해결 방안은?

-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의 경우, 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함.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는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
-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재판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보상의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 헌법재판관이 재판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한 각종 이익집단, 여론, 언론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관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사자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켜, 그 어떠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부 관점에 편향되지 않은 채 상정 가능한 이론적 관점을 풍부하게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 넓게 경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23. 헌법재판소 설립 후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 끼쳤다고 여기는 판결은?

○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의미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말씀드려야 한다면 호주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이 가족 내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크게 신장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24.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 · 참여 · 정당가입 등 정치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 이유는?

○ 공무원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 및 가입 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제65조 제1항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그 직무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규정들이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2019헌마1271).

○ 후보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현재 공무원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이기도 하므로(2021헌마1292),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공무원·교원 등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유는?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규정들이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2019헌마1271),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2018헌마551).

○ 후보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현재 공무원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이기도 하므로(2021헌마1292),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교원·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 보는데, 또 반시대적, 야만적 처사라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규정들이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2019헌마1271),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2018헌마551).

○ 후보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현재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이기도 하므로(2021헌마1292),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교원·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시 그 범위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규정들이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2019헌마1271),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2018헌마551).

○ 후보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현재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이기도 하므로(2021헌마1292),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이해충돌금지 원칙'도 대표적인 내재적 한계라고 보는지?

○ 헌법 제53조 제2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의 기간 내에)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하여 기간에 대한 요건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요건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재의요구권이 남용될 경우 국회의 입법권 침해 또는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므로, 그 헌법상 내재적 한계에 대해서는 권력분립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 대표 등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자는 안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 대표 등을 추천위원에 위촉하게 하는 안은,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숙고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보다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학 교수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재판관의 자격은 법관의 자격과 연동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도입과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지닌 법조인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화된 법조인들 가운데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의 구성 또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성별, 나이,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데, 헌재가 일종의 직무정지 실질심사를 담당,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를 피해자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탄핵소추의결시 헌법재판소가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행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결시 자동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하여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개선과제 3가지는?

○ 헌법재판소 운영방식에 관한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3.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인지? 내란정당이 맞다면 정당해산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정당이 해산될 수 없도록 이를 보호하되, 오로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 비로소 그 정당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정당해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2013헌다1).

○ 후보자로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4.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2209595),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2211357), 등 계엄 이후 발의된 특별법안 중 위헌요소 있는지? 있다면 해당 조항 제시

○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을 위해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하여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12.3 비상계엄 당시, 후보자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인지?

○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들(2024헌마1109 등 다수)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4.4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후보자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인지?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헌재 2025. 4. 4. 2024헌나8).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어려운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된 심판절차를 통하여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결론을 내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많은 국민들에게 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의견 대립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37. 지귀연 판사 구속기간의 시간계산 판결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기존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하였던 실무례와 결을 달리하는 결정이기는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견해를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후보자 입장

- 2012년, 2022년 재판소원 논란 있을 때마다, 후보자는 대법원 입장을 대변한바 있음. 현재도 그 입장 변함 없는지?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

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 4.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판결문에 동의하는지? 후보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는?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 3.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헌재 2025. 4. 4. 2024헌나8).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어려운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된 심판절차를 통하여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결론을 내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많은 국민들에게 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의견 대립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탄핵이라는 어려운 쟁점에 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40. 과거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전히 위헌이라 생각하는지, 후보자 의견은?

○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2004헌마554등). 위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결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충실히 심리하여 내려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위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후보자가 임면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함. 현재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헌재소장은 따로 임기가 명문화 돼 있지 않아, 헌재소장 임기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음. 헌법 재판의 독립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헌재소장 임기를 대통령 임명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명문화 하자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의하여 6년으로 정해져 있고(헌법 제112조),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임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 임명시 재판소장 임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성, 위상,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해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2. 헌법재판소 미제사건과 평균 처리기간 급증하는 문제에 관한 후보자 대책은?

○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 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사회적 중대 관심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수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숫자는 적은 상황이며, 매년 헌법연구관이 일부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은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건 심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을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인력들로 충원하여 어려운 사건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판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헌법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본안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리와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인의 헌법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선례가 없는 중차대한 헌법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사안에 심판 역량을 합리적으로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3. 후보자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법제도는?

○ 30여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구성원으로서 그에 대한 의견이 없을 리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제가 법원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을 언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법원의 제도적 개선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무엇보다 근본적인 심급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심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충분한 사실인정 심리가 가능하도록, 1심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전문법원을 확대·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1심 재판의 모습을 바탕으로, 2심과 상급심 제도의 변화 방향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4. 사법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 추진방안은?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5. 법관 탄핵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법관도 직무상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한 경우 탄핵 소추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6.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해결책은?

○ 30여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구성원으로서 그에 대한 의견이 없을 리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제가 법원의 인사제도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다만 법관 인사제도는 심급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 단계에서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집중적인 사실인정 심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2심 단계에서는, 사실인정심리의 경우는 1심과 비교하여 보충적으로 행하고, 법리적용의 당부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것에 국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 내부의 법관 평가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병행하여 가령 변협 등의 외부 평가를 보다 객관화하여 이를 축적시켜서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논의는 하였으나 외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잘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47. 국내 사법제도가 국제사회 기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 국민들의 신뢰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판사들의 성실도와 법리 이해도, 재판 진행 속도와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다만 선진 외국에 비하여 1인 당 법관이 부담하는 사건 수가 상당히 많은 사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8.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확대 여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재판이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49. 대법원의 재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 근본적으로는 심급제도가 각 심급별로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대법원의 재판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즉, 사실인정 여부가 대법원을 비롯해서 모든 심급에 걸쳐 다투어지게 될 가능성은 당사자를 장기간 지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인정에 관하여서는 1심에서 집중적인 사실인정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2심에서는 보충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과정이 충실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당사자가 이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장기화는 당사자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1심의 집중심리 및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당사자가 승복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정한 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 법관과 재판관 등 사법부의 구성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가 각종 이익집단이나 압력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원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는 한편,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폭 넓게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사법부의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1. 사법부의 정치 개입 또는 편향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양심’은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아닌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양심’입니다. 즉 법관 개인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이 어떤 정치적 이념에 편향돼서는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법리와 관점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부당한 영향에서 초연하여 스스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한 채 그저 사안이 주는, 그 주장이 주는 무게감을 정밀하게 저울질하는 것이 법관의 기본적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52.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 우선,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재판관 등 관계자가 재판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법부의 판단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재판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의 출발점은 사법부가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에 부응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각자의 재판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53.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한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54. 최근 3년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진일보했는가?

○ 형식적으로는 법에 따른 국가 작용으로 볼 수 있어도, 실질적 내용이 법치주의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의 형식성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계속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굳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5. 로스쿨 제도 및 사법시험 부활에 견해는?

○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는 2007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되어 이미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신분, 지위, 경제력 등과 관계없이 노력에 의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사법시험이 갖는 장점을 로스쿨 제도에 일정 부분 반영하여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명하게 결정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6. 군사법원, 군검찰 폐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은 군 조직이나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내부와 관련된 각종 사건을 일반법원 등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려에서 설치된 것으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군검찰의 공소제기나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이나 법원의 그것과 비교할 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을 통하여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일반 법원이나 검찰이 가지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7.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 견해 및 해결방안은?

○ 전관예우의 문제는 법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는, 재판을 하는 법원이 주로 실천하여야 할 과제가 있기도 하지만 법원 밖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와 제도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재판당사자의 눈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반대 당사자에게 치우진 진행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 자체로 이후의 재판결론의 정당성의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① 우선 법원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었던 회피, 기피 제도나 연고관계 재배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절차진행의 공정성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부당 변론에 대한 철저한 배척), 최종 판결에서도 논증을 충실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여 언제든지 비평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② 전관변호사의 배출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문제, 변호사 선임 경쟁을 줄이는 문제, 전관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수임된 사건의 내역을 공개하는 문제 등은 법관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연고의 힘을 크게 신뢰하는 연고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입장에서는 재판부와의 연고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연고주의가 작동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8.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89헌가104).

○ 이에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59. 정치 집회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질서가 충돌시 후보자 견해는?

○ 정치 집회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 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기본권의 행사도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은 법익들과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 비례성을 준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0.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8헌바223 결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과거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전히 정전협정 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하에서 공존가능한 정치적 견해 내지 관점에 대하여는 국가형벌권이 쉽게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의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으로써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17헌바42등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제7조 제1항)과 이적표현물조항(제7조 제5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4헌바134) 사건 등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 국방부가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고 보는가?

○ 관련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후보자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64. 사형제 운영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찬반양론이 있어 왔고, 현재 세계 각국의 입법례도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극악한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현재도 헌법소원심판사건(2019헌바59)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언론사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허위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안인데, 관련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6. ‘법조일원화’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성숙한 시각을 가진 법관을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실제 시행을 하면서는 법원의 인력 충원상의 문제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가야 할 부분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의 세부내용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7. 현재 대법원 판결이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개선과제 3가지는?

○ 심리불속행의 기준에 대하여 불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판결 내용을 보다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8.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그 국가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 강간등 상해,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정의실현과 피해회복의 길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적 안정성 등의 법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69.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오랜 비판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음주운전이 근절되어야 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몇 차례의 수정을 통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지 않는 적정한 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관들 사이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70.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2024헌나8) 결정에서,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2인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2인의 보충의견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보자로서 위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 또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법안과 관련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72. 일선 법원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 생각은?

○ 판결문 공개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73. 일부 일탈을 저지른 법관만을 전문적으로 재판하는 사법징계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 생각은?

○ 법관에게는 높은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이 요구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법관의 징계와 관련한 제도는 사법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제도화 여부 및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4. 지역검사장 · 지역법원장 직선제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 지역검사장·지역법원장 직선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데,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후보자가 이에 바로 답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 변화를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참조한 뒤, 충분한 논의와 사회의 합의를 통해 결국 국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 아래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직접 선출된 검사장, 법원장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매우 민감하게 의식할 경우, 법리와 증거에 따른 기소와 재판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75.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공적 증명나 장부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유독 대법원(법원행정처)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열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연간 약 7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음.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 등기사항의 열람'만이라도 무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76.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상대방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입법적으로 물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나 사정으로 대화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할 경우의 문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7.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형사법원 판례와 달리, 본인이 참여한 대화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2013나8981)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사안의 구체적 경위를 살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중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78. 국민 다수가 본인 참여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민사상으로도)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고, IT 기술의 발달로 '자동녹음기능' 등 대화와 통화 녹음이 일상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차별 다수가 언제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와 완전히 동일한 행위에 대한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판단을 통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 중에도 민사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형성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79.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예결산 심사를 받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재판작용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국회의 견제권한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80. 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사·검사를 포함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위헌 소지는 없는지?

○ 변호사법 제5조에서는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사 또는 검사는 파면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1. 대한민국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명목으로 기업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 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제시된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82.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구조가 헌법적 균형에 부합하는가?

○ 수사와 기소의 통합과 분리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지는 충분한 공론화와 검토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데,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견해는?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검찰 기소독점이 권력기관 비대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한 평가는?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조화는 어떻게 이뤄져야 합니까?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86.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수사단계에서도 동일 적용되어야 하는가?

○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원리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 적법절차는 비단 신체의 자유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기본권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라고 할 것입니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 수사의 밀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적법절차원칙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12헌마191등).

87. 헌법재판소가 검찰개혁 입법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기준은?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공익 대표자로서 검사라는 위상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다양한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권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법적·윤리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공적인 책무를 가지며, 법과 원칙을 따르는 가운데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9.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적 과제라고 생각하는가?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최근 수년간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을 헌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는가?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검찰의 '정치 검찰화'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나 장치가 있는가?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원론적으로 헌법의 대원칙인 법치주의, 권력분립 및 적법절차원칙 등은 공권력 행사의 모든 영역에서도 지켜질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92.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위치는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3. 검찰이 내란수괴 혐의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사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견해는?

- 검찰개혁 4법에 독소조항 있는지, 있다면 해당 조항 제시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검찰청법 개정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있다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겠나?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헌법89조에 따른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공소청법에 대한 의견은?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검찰 권한 행사가 국민기본권 침해 시 헌재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검찰의 권한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 등을 비롯한 헌법상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그 헌법상 한계를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8.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이를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적절한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다른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용도가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검찰개혁 좌초 시,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 질의는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해외 주요 국가들의 헌정질서와 한국의 구조를 비교했을 때, 개혁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수사와 기소의 통합과 분리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지는 충분한 공론화와 검토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데,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101.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어떤 메시지를 시민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검찰의 권한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 등을 비롯한 헌법상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그 헌법상 한계를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2. 2022년 4월, 민주당 검찰정상화법 추진에 대해 검사들이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하며 집단반발했지만, 어떠한 징계처분도 내리지 않음. 같은 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는 대기발령 조치함. 2023년 9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참석하기 위해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 연가 또는 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는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 처분하겠다고 경고한바 있음.

- 검찰, 경찰, 교사 모두 공무원인데, 똑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에게는 문제삼지 않고, 경찰과 교사에겐 문제 삼는 것, 온당하다 보는지? 헌법 원리에 맞는건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하여 징계 여부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타기관의 징계 여부에 대하여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3. 대한민국 지역간 양극화 해소 및 공공기관, 공기업의 지역(지방) 이전에 대한 견해는?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을 위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제122조에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 이전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기관의 규모와 그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필요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4.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대검찰청은 서초동에, 헌법재판소는 안국동에 위치함. 주요 사법권력, 검찰권력이 서울에 집중돼있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시키려는 개정안 현재 국회 계류중.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이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사무처 등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과 헌법학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관련 연구와 논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 노란봉투법에 대한 견해는?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면책 요건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에서 부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들이 다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국회 내부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저출생시대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 출산율의 증감은 여러가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국가와 사회 모두가 다방면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헌법상 보장된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07. 청년 실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고용 문제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실업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무엇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단언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고, 여성이나 연소자의 근로에 관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정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헌법 제32조). 이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아직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여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108. 통일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 및「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에 대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하며,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9. 군 가산점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보자로서 위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존엄사에 대한 견해는?

○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2009다17417)을 통해 처음으로 존엄사가 허용되었고,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존엄사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2023헌마1396)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양성평등에 대한 후보자 견해와 실현 방안은?

○ 헌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제11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제10조)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제36조)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별 갈등 못지않게 남녀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가 성별로 갈등하고 분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112. 청소년 범죄 관련 일명'촉법소년'논란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 및 제재로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최후의 단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중하게 여기는 편에 속합니다. 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소년법의 입법취지와 각국 소년형사법제도의 태도도, 개인적으로 1년간 소년재판을 하였던 경험도,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형사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육하고 그를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의 변화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과 다른 모든 교육기관 등이 모두 힘을 합하여 함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소년범죄의 피해자 역시 소년인 경우가 많고 여러 면에서 취약한 심리적 상황 등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년들의 성장 속도, 학업 단계(만 13세 전후 중학교 입학), 소년범죄 발생 비율의 증가 현상 및 흉포화 경향 등을 고려하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은 입법정책면에서 도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3.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후보자 견해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접근권에 관해 규정하면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과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8조). 이와 같이 장애인 역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장애인 이동권 내지 접근권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3. 5. 25. 2019헌마1234).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한다면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 사회적 약자의 기준과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 사회적 약자를 규범적으로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사회의 주류적 인식이나 관점을 공유하는 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여 정치·경제·사회적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취급 받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등이 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여지가 생기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긍정적 화합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뿌리내리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15. 젠더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최근 젠더갈등이 심화되면서 남녀 간 이분법적인 사고가 고착되며, 또 다른 젠더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더갈등은 사회 구조의 문제, 경제적 불안정, 문화적 변화, 기술 환경,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 부족과 상호 이해의 결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제11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제10조)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젠더폭력과 불평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사회가 성별로 갈등하고 분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116. 극우단체에 대한 정의와 헌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은?

○ 극우단체는 단어 그대로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지닌 사람이 모인 집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좌·우파 이념이 상대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단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단체의 성향만을 이유로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해당 단체의 활동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7.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 테러, 침탈 등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18. 시민들의 응원봉 시위, 촛불시위 문화에 관한 후보자 견해는?

○ 촛불시위와 응원봉 시위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민 주도의 평화적 시위운동입니다. 이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였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119. 친일파 재산의 국고 환수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결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정의에 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친일재산의 추정에 관한 동법 제2조 제2호 후문, 친일재산을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충실히 심리하여 내린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은?

○ 대법원은 2018년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해자(또는 상속인들)는 해당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고(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접 관련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협정으로 소멸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명확히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확정된 법원 판결이 이행되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121. 동물복지, 동물권 향상을 위한 방안과 후보자 견해는?

○ 동물보호법의 명칭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신설, 동물보호소 사칭 동물판매업 금지, 동물학대 혐의자 임시 격리조치 가능 등 실질적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와 보급을 촉진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들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 발의안을 비롯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여러 건의 민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국회 내부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한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안, 위헌 소지 없는지? 위헌적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하여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지역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위헌 소지는 없는지?

○ 지역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하여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 수여받은 경우(고 김홍빈 대장), 국가가 신체·재산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소급적용 가능할지?

○ 현재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위선양자의 영사조력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하여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기고 있습니다.

127.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덕목은 무엇인지?

○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과 함께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모든 구성원의 소명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위와 같은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염두에 두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충실한 심리와 평의를 거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충실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식견들을 경청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가짐, 헌법재판소가 부여받은 위와 같은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8.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제청을 수락한 이유, 지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저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이유를 통해 짐작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30여년간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재판 실무경험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이 최고의 재판규범으로 실제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방법론을 보고 배웠고, 이후 재판 현장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나름 일관되게 노력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이와 같은 경험과 역량을 살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수락하였습니다.

129. 헌재소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성과는?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0.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30여 년간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재판 실무경험을 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하면서, 헌법이 최고의 재판규범으로 실제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방법론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후 재판 현장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나름 일관되게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살리고자 합니다.

○ 법원행정처장으로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따뜻한 포용의 리더십으로 구성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현안들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 경험 역시 살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화합과 역량 발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하여왔더라도 한 사람이 가지는 경험의 한계를 잊지 않고,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31. 가장 좋아하는 법언과 그 이유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의 이익으로

132. 법조계 직역 중 법관을 택한 이유

○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법조인은 사회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가르침과 조언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살아보고자 법조인, 그 중 법관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133. 자택 또는 사무실로 구독하는 신문은?

○ 없습니다.

134.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평가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후보자가 생각하는 적폐는 무엇인지?

○ 적폐는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관행이나,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폐단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잘못이 아니라 사회에 고착화된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부당하고 잘못된 관행을 원래 그런 것처럼 여겨왔더라도 이는 결국 사회의 약자에게 피해와 박탈감을 주게 되는 것으로 작은 것이더라도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이고 꾸준히 개선과 혁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공정한 시스템, 기득권에 유리한 특혜, 연고주의와 같은 것들을 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6.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법조인과 그 이유는?

○ 법관으로 일하던 동안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선배 법관님들 모두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양삼승 변호사의 글을 자주 읽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과 '권력, 정의, 판사'라는 저술에서 양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용기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더욱이 정의를 말해야 할 때에 말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법조인은 특히 최후의 심판자인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국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희생을 감수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지적을 새기고 있습니다.

137. 후보자가 살아오며 가장 영향을 받은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철학이 헌재소장직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 보는가?

○ 지난 4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아계신 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돌아가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애도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 중의 한명입니다. 교황께서는 교황이 되시기 전이나 그 뒤에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다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과 정일우 신부님을 존경합니다.

○ 후보자의 가톨릭 세례명은 이보(Ivo)입니다. 이보 성인(Saint Ivo)은 판사로 일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하여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의 변호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분들의 봉사하고 섬기는 소박한 솔선수범의 삶을 본받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따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38. 후보자의 국가관, 인생관은?

○ 저는 법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적지 않은 재심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법원의 재판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 어떤 평가를 받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오랜 세월이 지나 후대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 관련 책들도 많습니다.

○ 결국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역사적 평가를 받았던 판결들을 보면,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설득력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가능성을 확장하는 등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깊게 고민하여 내렸던 판단들이었습니다.

○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일관하여 관통하는 가치가 무엇일지 토론하고 숙고하면서 이를 반영한 헌법재판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걸어 간 길이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길이었음을 역사가 기억하도록 애쓰겠습니다.

139.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배경이 헌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 개인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의 의미를 가볍게 여겨 재판한다면 이는 곧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그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 의하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습니다.

○ 다양한 법리와 관점들이 치열하게 교환되고 토론되어야 좋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한 채 그 저 사안이 주는, 그 주장이 주는 무게감을 정밀하게 저울질하는 것이 재판 기본적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 등을 생각하면, 공개 변론 등 심리의 내용이 투명하고 깊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의 또한 9명의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명의 재판관이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고집을 관철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40. 후보자가 그동안 내린 의미 있는 판결(3가지)이 있다면?

○ 후보자가 주심 대법관으로서 관여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이 기억에 남습니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종래에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한정하여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봐왔던 것과 달리,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로,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혼인파탄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따라 마련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해당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제33조가 명시한 노동3권이 국가권력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의 성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영역의 법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객관적 헌법 가치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1. 후보자가 그동안 내린 아쉬운 판결(3가지)은?

○ 법관이 성심을 다하여 재판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증거에 따라 한 것인 이상 어느 당사자에게는 억울한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판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재판, 당사자의 어떤 주장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등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돌이켜 보면 초창기 단독 재판장 시절 타당한 결론 도출에 보다 치중한 나머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에 소홀하였던 적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42. 판사 시절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는데 가장 수긍했던 판결 3가지

143. 판사 시절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는데 가장 수긍하기 어려웠던 판결 3가지

○ 사안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형사 사건에서 제가 한 1심 합의부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검사의 추가 입증이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것이긴 하였지만,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심 재판 단계에서 그 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아 반성한 바 있습니다.

○ 나이 든 남성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을 강간한 사안에서, 어눌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기억과 그 표현이 부족한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생각되어 수긍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144.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판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 우리나라의 역사상 여러 판결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2005. 2. 3.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대법원의 2005. 7. 21. 여성의 종중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양성평등 실현에 큰 영향을 끼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45.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후보자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6. 시대 변화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 간의 괴리로 고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 특별히 기억나는 사안이 없습니다.

147.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법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는지?

○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혀간다면 보다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판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배운 것에 터 잡아, 범위를 좁혀 '재판에 있어서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에서 보통 '정의의 실현'을 체감하게 됩니다. 원칙의 준수는 마땅히 요구되기도 하고, 정의의 출발점이거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원칙이 미처 상정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취급한 '예외적 사정'도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경청하지 않거나 세심하게 살펴보지도 않은 채 원칙만을 유일하게 강조하는 재판을 한다면, 이를 두고 '당사자도 기꺼이 승복할만한 정의로운 재판'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원칙을 존중하고 실천하되, 정당한 예외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48. 후보자는 법관 시절 소속으로 활동한 연구회가 있는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 성향 연구단체가 세력화 및 정치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법원 내 연구회에서 활동하였고,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모든 연구회와 커뮤니티에서 탈퇴하였습니다.

- 헌법연구회는 설립 당시인 2006년경에 가입하였습니다.
- 형사법연구회는 2010년경 가입하였습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4. 11.경 가입하였습니다.
- 노동법분야연구회는 제가 서울고등법원의 노동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보임된 이후인 2016. 3.경 가입하였습니다.
- 그 밖에 법원 내 가사소년재판부커뮤니티와 민사재판커뮤니티에 가입하였습니다.

○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겠지만 판사들도 자신의 일, 재판을 잘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적용될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하여 자기 재판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법원에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이 있으나 이는 판사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연구하는 학술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저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이유를 통해 짐작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30여년간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재판 실무경험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장의 덕목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과 자질은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과 함께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모든 구성원의 소명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위와 같은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염두에 두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충실한 심리와 평의를 거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충실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식견들을 경청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가짐, 헌법재판소가 부여받은 위와 같은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취임하게 될 경우 가장 우선해서 추진 할 업무는?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 교육, 토론 등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헌법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통해 이러한 시민의 참여 의지에 부응한다면,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지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재판관들과 고민하여 보겠습니다.

4. 현재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의 조직이나 제도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을 봉직하게 된다면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본 뒤, 여러 의견을 경청하여 개선 방향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5.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12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司法的)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모두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사자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켜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부 관점에 편향되지 않은 채 이론적 관점을 풍부하게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 넓게 경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6. 현재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이 사회 각 분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재판관 판결에 추천자의 의사가 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재판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헌법재판관 스스로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하며, 추천 등 어떠한 이유로든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킴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최근 이러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은 경제질서에 관하여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이어 제120조부터 제127조에 이르기까지 경제질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헌법 규정은 기본권에 관한 의미와 연관을 가지면서도 우리나라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이기도 합니다. 이를 지키는 것이 또한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국가보안법 및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견해는?

○ 과거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전히 정전협정 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하에서 공존가능한 정치적 견해 내지 관점에 대하여는 국가형벌권이 쉽게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의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으로써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찬반양론이 있어 왔고, 현재 세계 각국의 입법례도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극악한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17헌바42등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제7조 제1항)과 이적표현물조항(제7조 제5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4헌바134) 사건 등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서도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현재도 헌법소원심판사건(2019헌바59)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법원행정처장 재직시 불거진 법원노조 이면합의 논란 관련 입장은?

○ 법원행정처는 법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과 정책추진서를 작성하였으나, 2023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받고있고, 이후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시의 법원행장처장으로서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10.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입법과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세계적으로 종래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소송이나 헌법재판에서 다투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법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분쟁을 해결해내는 역할을 분명히 하기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합의를 통해 답을 얻어내어야 하는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치열한 토론과 깊은 고뇌와 숙고를 거쳐, 공동체에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설득해 내는 것이 타당하고 올바른 해답을 얻어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조정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그것이 법률의 위헌결정인지 아니면 법원이 한 법률해석의 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이러한 쟁점의 의미와 영향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각자의 입장과 법리를 잘 정립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두 기관 모두 헌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임무를 가진 사법기관이므로, 각자의 헌법과 법률해석을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하여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데에 일치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를 하고,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한정위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가 서로 다르고, 접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여러 한정위헌 결정 중 어떤 것은 법률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이지만, 어떤 것은 개별적인 법률해석의 시정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만약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한정위헌 관련 사건들의 연구보고서와 학계의 논의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 지연 해소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 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사회적 중대 관심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수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숫자는 적은 상황이며, 매년 헌법연구관이 일부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은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사건 심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을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인력들로 충원하여 어려운 사건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판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헌법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본안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리와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인의 헌법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선례가 없는 중차대한 헌법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사안에 심판 역량을 합리적으로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은?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결국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 있어서는 심급 고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급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심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충분한 사실인정 심리가 가능하도록, 1심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전문법원을 확대·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1심 재판의 모습을 바탕으로, 2심과 상급심 제도의 변화 방향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재판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에 부응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2004헌마554등). 위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결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충실히 심리하여 내려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위 결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현행 헌법 개정 필요성 및 개정 요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라는 점에서, 개헌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어 온 여러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넓고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헌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탄핵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견해와 개선 방안은?

○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하는 탄핵제도는 '비상적 수단'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하여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 일부 탄핵 사건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본인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이유를 통해 짐작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30여년간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재판 실무경험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장의 소임이 무엇이며, 후보자는 그에 필요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과 함께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모든 구성원의 소명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위와 같은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염두에 두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충실한 심리와 평의를 거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충실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식견들을 경청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30여 년간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재판 실무경험을 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 법원행정처장으로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구성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현안들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 경험 역시 살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화합과 역량 발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는 위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하여왔더라도 한 사람이 가지는 경험의 한계를 잊지 않고,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며, 국회,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직무에 임할 계획이십니까?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 교육, 토론 등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헌법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통해 이러한 시민의 참여 의지에 부응한다면,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2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司法的)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모두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사자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켜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부 관점에 편향되지 않은 채 이론적 관점을 풍부하게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 넓게 경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5.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부여받은 심판 권한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6.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헌재 2025. 4. 4. 2024헌나8).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어려운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된 심판절차를 통하여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결론을 내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많은 국민들에게 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의견 대립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헌재 2025. 4. 4. 2024헌나8).

○ 한편,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 다수)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질의도 위 사건에서 다루어질 중요 쟁점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내란 등을 일으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헌법상 사면·복권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 내란 등 특정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헌법상 사면·복권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사면법상으로 사면심사위원회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어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9. 법관(헌법재판관 포함)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제가 만약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어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이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공익적 변호사를 할 생각 정도를 막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10.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등 영리 활동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 9번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적어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사건 수 등을 기초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급제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법관 재직 시절부터 재판제도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여 하급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법원을 확대하여 전문적 사건 분야의 재판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변화된 하급심 재판의 모습을 바탕으로, 상고심 구조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등이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2.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수청·공수청·국가수사본부 등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 경력법관 선발이 여전히 필기시험 위주로 운영돼 법원이 상대적으로 젊은 응시자를 선호하고, 그 결과 예비 법조인들이 다양한 실무사회 경험을 쌓기보다 시험 준비에 몰두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넓은 사회 경험과 여러 법조 분야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법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여러 입장들이 치열한 논쟁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때에야 그 결론이 비로소 보다 높은 설득력과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력을 갖춘 경력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헌법 규정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2020헌마389등 결정에서, 2031년부터 2041년까지 사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과소보호하였으며, 현행법상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중장기적 감축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법률조항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 경로를 보장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명확히 법에 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라는 점에서, 개헌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한 다음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6.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기준연도(2018년)는 총배출량, 목표연도(2030년)는 순배출량을 사용해 감축률이 과소 산출됐다는 이유로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정족수 미달로 기각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같은 산식 불일치가 국가의 환경권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보시는지요?

○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2020헌마389등 결정에서, 2031년부터 2041년까지 사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과소보호하였으며, 현행법상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중장기적 감축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법률조항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 경로를 보장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명확히 법에 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처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

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주요 연구 내용 혹은 성과는?

○ 해당 연구회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19.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관 연구모임의 의의와 가치는 무엇인지?

○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겠지만 법관들도 자신의 일, 재판을 잘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적용될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하여 자기 재판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법원에 법관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이 있으나 이는 법관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연구하는 학술단체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0. 헌재 9인 체제 복원되면 지연돼온 심판 일정 정상화 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데, 헌법재판관 취임 시 심판절차에 임하는 데에 있어 후보자의 원칙과 기조는?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지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재판관들과 고민하여 보겠습니다.

21. 법원행정처장 경험을 살려 헌재의 행정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계획은?

○ 법원행정처장으로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구성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현안들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화합과 역량 발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충실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법관 재직 당시 수차례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이 헌법재판관으로의 업무 수행에 있어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 보는지?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으로 두 번 파견되어, 4년간 근무하면서, 헌법이 최고의 재판규범으로 실제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방법론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후 재판 현장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나름 일관되게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후보자는 왜 본인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 저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이유를 통해 짐작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30여년간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재판 실무경험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인지?

○ 후보자의 좌우명은 회인(懷人, 懷仁)입니다. 품을 회(懷)에 사람 인(人) 또는 어질 인(仁)으로, 살아오면서 늘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고 품으려고 노력했으며 덕을 쌓고 어진 것을 가까이 하는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3. 헌법재판소장이 가져야 할 주요 덕목 3가지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과 함께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모든 구성원의 소명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위와 같은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염두에 두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충실한 심리와 평의를 거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충실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식견들을 경청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가짐, 헌법재판소가 부여받은 위와 같은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본인의 헌법 해석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은 무엇인지?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혼인파탄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따라 마련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해당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제33조가 명시한 노동3권이 국가권력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의 성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영역의 법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객관적 헌법 가치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종래에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한정하여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봐왔던 것과 달리,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로,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OECD 가입국 중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교원의 정치 참여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교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3인의 의견,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3인의 의견에 따라 위헌결정을 하였고,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합헌 결정 부분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2001헌마710 및 2011헌바42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후보자로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보안법 존치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과거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전히 정전협정 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하에서 공존가능한 정치적 견해 내지 관점에 대하여는 국가형벌권이 쉽게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의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으로써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17헌바42등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제7조 제1항)과 이적표현물조항(제7조 제5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4헌바134) 사건 등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기존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하였던 실무례와 결을 달리하는 결정이기는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견해를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하여 선거운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8헌바223 결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2004헌마554등)이라는 판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2004헌마554등). 위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결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충실히 심리하여 내려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로서 위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헌/위헌 여부가 첨예한 사안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당사자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켜, 그 어떠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부 관점에 편향되지 않은 채 상정 가능한 이론적 관점을 풍부하게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 넓게 경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치인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후원했는지?

○ 일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배우자가 이종걸 국회의원(민주당)과 강영환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에게 각 1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찬반양론이 있어 왔고, 현재 세계 각국의 입법례도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극악한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현재도 헌법소원심판사건(2019헌바59)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가장 좋은 결정 5개와 가장 아쉬운 결정 5개를 꼽아주십시오.

○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드려야 한다면, 첫째, 검사의 중형 구형이 있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아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헌재 1992. 12. 24. 92헌가8)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를 신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호주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이 가족 내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신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 일련의 결정들을 통해, 법관으로서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확인되고 보장된다는 신념하에, 양쪽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여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일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아쉬움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판결 5건과 후회되는 판결 5건과 그 구체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판결

후보자가 주심 대법관으로서 관여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이 기억에 남습니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종래에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한정하여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봐왔던 것과 달리,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로,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혼인파탄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입니다. 태아의 건강 손상도 근로자인 모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고, 출산으로 인해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여성 근로자와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규정의 취지와 정신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따라 마련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해당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제33조가 명시한 노동3권이 국가권력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의 성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영역의 법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객관적 헌법 가치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후회되는 판결

○ 법관이 성심을 다하여 재판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증거에 따라 한 것인 이상 어느 당사자에게는 억울한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판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재판, 당사자의 어떤 주장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등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돌이켜 보면 초창기 단독 재판장 시절 타당한 결론 도출에 보다 치중한 나머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에 소홀하였던 적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5.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최우선 개혁 과제는 무엇이고, 개혁을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 교육, 토론 등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헌법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통해 이러한 시민의 참여 의지에 부응한다면,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6. 후보자, 배우자, 자녀 중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 후보자, 배우자, 자녀 중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 후보자, 배우자, 자녀 중 장기간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 고위 법조인이 퇴직 직후 로펌 등에 취직하여 전관예우 관행이 횡행한다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이 많은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전관예우 해결 방안과 입법을 통해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전관예우의 문제는 법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는, 재판을 하는 법원이 주로 실천하여야 할 과제가 있기도 하지만 법원 밖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와 제도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재판당사자의 눈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반대 당사자에게 치우진 진행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 자체로 이후의 재판결론의 정당성의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① 우선 법원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었던 회피, 기피 제도나 연고관계 재배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절차진행의 공정성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부당 변론에 대한 철저한 배척), 최종 판결에서도 논증을 충실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여 언제든지 비평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② 전관변호사의 배출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문제, 변호사 선임 경쟁을 줄이는 문제, 전관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수임된 사건의 내역을 공개하는 문제 등은 법관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연고의 힘을 크게 신뢰하는 연고주

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입장에서는 재판부와의 연고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연고주의가 작동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지명소식을 통보받은 일시, 통보자와 인사청문 담당 공무원 인적사항을 요청드립니다.

○ 2025. 6. 26. 지명소식이 언론에 최초 보도되기 약 30분 전쯤에, 딸을 통해 지명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후보자가 그 즈음 여행으로 독일에 체류 중이어서 검증과 관련된 후보자의 국내연락처로 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딸에게 지명소식을 통보해 주었고, 후보자는 딸을 통해 연락받았습니다.

21. 헌법재판소 소장의 소임이 무엇이며, 재판관과 달리 소장이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과 함께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모든 구성원의 소명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위와 같은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염두에 두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충실한 심리와 평의를 거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충실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식견들을 경청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가짐, 헌법재판소가 부여받은 위와 같은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 후보자가 감명깊게 읽은 책과 영화는 무엇입니까?

○ 저는 양삼승 변호사의 글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과 ‘권력, 정의, 판사’라는 책에서 양삼승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용기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더욱이 정의를 말해야 할 때에 말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법조인은 특히 최후의 심판자인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국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희생을 감수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법관으로 일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 이웃들의 삶, 사람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은 영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 중 ‘나의 아저씨’, ‘파친코’, ‘우리들의 블루스’, ‘눈이 부시게’,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같이 울고 웃었습니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 서로 이해하고 아껴가며 헤쳐 나가는 모습들을 보며 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보고,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처지를 속 깊게 헤아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성실하게 살아오다 실직된 주인공이 실직연금을 받으려는 노력이 심사를 맡은 국가기관의 관료적인 태도에 막혀 좌절되는 과정을 그리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이 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혹은 삶의 방향에, 크든 적든 영향을 줍니다. 그런 일을 하는 법관이 갈등의 본질, 분쟁 상황에 놓인 당사자의 처지를 섬세하게 공감하

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권한을 형식적으로 행사할 경우, 그 결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 재판 관련 영화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 중 한국 영화 '증인'과 일본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가 기억에 납니다. 재판을 통하여 진실에 다다르는 과정의 어려움, 그 길을 가로막는 여러 사정들을 비교적 냉정하게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나의 내면에, 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자각을 합니다. '증인'의 경우 자폐아 등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없는지,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경우 재판받는 사람들의 주장을 상투적인 변명으로 가볍게 치부하지는 않았는지 등등을 성찰하게 됩니다.

2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주장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처벌 조항에 대하여 개정 내지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폐지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여부, 명예를 중시하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처벌의 필요성,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조계와 학계 등의 의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확인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기각 5: 위헌 4)을 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심신미약 감형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음주는 범죄를 유발하는 면이 있어, 이러한 점을 예상하고도 음주에 나아간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에 의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정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형벌을 정하는 것이 필요지만 심신장애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형사정책적 관점과 형법상 책임원칙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처벌강화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 및 제재로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최후의 단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중하게 여기는 편에 속합니다. 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소년법의 입법취지와 각국 소년형사법제도의 태도도, 개인적으로 1년간 소년재판을 하였던 경험도,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형사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육하고 그를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의 변화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과 다른 모든 교육기관 등이 모두 힘을 합하여 함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소년범죄의 피해자 역시 소년인 경우가 많고 여러 면에서 취약한 심리적 상황 등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년들의 성장 속도, 학업 단계(만 13세 전후 중학교 입학), 소년범죄 발생 비율의 증가 현상 및 흉포화 경향 등을 고려하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은 입법정책면에서 도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법은 국가권력의 행사가 자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에 의하여 이를 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사법은 입법과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하고, 재판의 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자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수결 원리에 입각한 선출 절차에 의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법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구현은 인적구성, 즉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실질적으로 평등한 결과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 후보자로서 사법부의 통제 강화 방안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우나 말씀드리자면,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부 외부의 관점 즉 국민의 관점이 들어와서 사법부 내부의 관점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가 재판제도, 인사제도 개선, 사법정보화 등 사법행정 현안 관련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의·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27.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이 나오는 등 소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동성 결혼 합법화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동성애는 사적인 영역에서 인간이 가지는 내밀한 성적 지향에 관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과 태도는, 그들도 고유한 인격을 실현하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동성혼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다수의 동성혼 사건이 심리 중에 있으므로(2025헌바133 등),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란 무엇인지?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것과, 이를 통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폭넓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9. 판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법조인은 사회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가르침과 조언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살아보고자 법조인, 그 중 법관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30.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직접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적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합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나(96헌마48 참조),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2003헌마337 참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집행행위의 실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 등이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한 사건에서는 과거 직접성이 부정된다는 선례(2010헌마439)를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참조).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이러한 의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관련 연구와 논의를 숙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 헌법소원 사건 중 각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각하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헌법소원에 요구되는 공권력행사성, 자기관련성, 보충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안의 실질을 고려하여 적법요건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이러한 의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관련 연구와 논의를 숙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 헌재는 헌법연구관, 서기관 등 핵심 인사에 대한 재판관의 전권적 영향력이 크고, 외부적 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2023년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 논의가 없는 가운데, 투명성 및 절차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헌재 내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33. AI, 빅데이터, 플랫폼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알고리즘 차별 등 새로운 기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헌재의 판례 또는 해석을 통해 디지털기본권을 실질화할 방안이 있다고 보는지?

○ AI, 빅데이터, 플랫폼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 기본권의 보장체계에서 상정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기본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AI와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집·분석되는 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나, 알고리즘의 편향과 차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아직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제까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며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확장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기본권의 화두에 대해, 기존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헌법의 가능한 해석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기본권의 영역이 기존의 체계와 모순되고 충돌되지 않도록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이러한 의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관련 연구와 논의를 숙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윤석열이 시도했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위법과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은?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헌재 2025. 4. 4. 2024헌나8).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어려운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된 심판절차를 통하여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결론을 내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많은 국민들에게 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의견 대립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 한편,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 다수)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질의도 위 사건에서 다루어질 중요 쟁점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합니다.

○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추가하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과정과 그 정신, 특히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헌신적으로 실천한 것이고 이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뚜렷이 기여한 점을 생각하면, 저는 현행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에 관한 내용처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36.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면권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사면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7.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판결문 공개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38.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 및 재판연구원의 1심 재판부 배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복잡한 사건의 증가와 이로 인한 법관의 업무과중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판 업무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재판연구원을 확대하여 등 재판 인력을 증원하여 재판 지연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여 하급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재판연구원의 선발 규모 확대 및 재판연구원의 1심 재판부 배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39.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다른 기관의 발표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본인의 견해와 다른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사안이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후보자 본인의 견해와 다른 답변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2.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후보자에 대해“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이에 관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기본권에 꼭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어 온 여러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넓고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현행 87년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억제하는 헌법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특히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과 정보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섬세하게 마련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기소편의주의와 법원의 확장해석이 결합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사법의 정치화가 초래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8개 공소사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검찰 수사팀을 전면 개편하여 수사 및 기소한 것임. 검찰의 기소편의주의가 정적죽이기 수사에 악용된 사례라고 판단하는데, 이 판단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시민통제, 기소배심뿐이라는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부 회부 2일 만에 결심하고 9일 만에 선고하고,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음. 유죄취지로 판결한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10명인데,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함. 이 현상과 결과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판결이라고 판단되는데, 대법관이라기보다는 그저 고위 공무원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대법원마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 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에는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더욱더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46. 후보자는 과거(2018) ‘현재 우리사회에 산적해있는 여러 인권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인권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성인권 문제’를 꼽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어떤 인권이슈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는 인권문제에 우선 집중하고자 합니다.

47. 여성인권이 당시에 비해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 남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 역할에 따른 구조적 성차별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법 제도와 평등의식 등이 발전하면서 성차별적 현상이 많이 사라지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구성원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48.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무엇인지?

○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회 전반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49.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동성애는 사적인 영역에서 인간이 가지는 내밀한 성적 지향에 관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그들도 고유한 인격을 실현하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 우리 사회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 의견이 분분한데, 합의점을 이루기 위한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성소수자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나 동성혼 등의 법제화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영향, 성적 소수자가 주로 차별받는 영역이나 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의 대표자이신 국회에서 차별금지의 영역과 그 정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1.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매우 첨예한 찬반양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차별의 영역에 놓인 사람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굳건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차별의 영역에 놓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률, 차별받는 이들을 지지하는 내용의 입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52.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 후보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법관으로 재판을 하면서 균형감을 갖추고 포용적인 자세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53. 낙태죄 위헌 결정 당시 개인적 판단과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권 보장(여성 건강권) 사이의 헌법적 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2017헌바127).

○ 이 결정에서는 의견이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재판관 4인은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위헌인 것은 아니지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의견을 제시하였고, 재판관 3인은 임신 제1삼분기(대략 임신 14주 무렵까지)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재판관 2인은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 등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을 합헌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저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며, 후보자로서 위 결정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인 2020. 12. 31.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여 낙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그에 관한 합법적인 의료지원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뜻을 모아 입법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54. 국제노동협약과 헌법이 상충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노동기구(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약이 정식으로 비준·공포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우리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친 ILO 기본협약 비준안을 2024. 4. 20. ILO에 기탁하였고, 기탁일부터 1년 후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휘됨에 따라 앞으로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9호(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노동계는 비준된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며, 반드시 국제협약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협약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5.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노동의 가치가 단순 생계수단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헌법적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견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로서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헌재 2015. 12. 23. 2014헌바3 등 참조).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의 권리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수단이라는 의견에 대해 공감합니다.

56.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처럼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같이 직접 고용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안정적인 지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고된 업무 환경으로 인한 건강 및 안전 문제, 경제적 빈곤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위장 프리랜서 관행 등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는 노동자 개인의 생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57.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어떤 범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1헌바50).

○ 또한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後者)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도 하였습니다(2004헌마670 등).

○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헌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는데 상충 시,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 및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96헌가4등).

○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이와 같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2001헌바50 등).

○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기후위기로 건설근로자(일용직) 등 옥외 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폭염이 지속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계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 한파에 대한 작업중지·작업시간 조정·휴식 제공 의무를 명시하지만, 법적 명확성과 강제성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됩니다.

○ 2018년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극한기상시 작업 중단·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전국적·상시적인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기후 위기는 옥외 노동자에게 단순히 건강 위험을 넘어,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극한기상에서 생계불안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사회적·법적 기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60.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수용됐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25헌가12)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향후 헌법 개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어 온 여러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넓고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2024.3월 재산신고 기준) 장녀(1995년생, 현재 31세)의 예금 재산이 총 1억 1883만원 가량되는데, 재산 형성 사유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지? 상속증여세 납부액은?

○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5월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급여 중 일부를 매월 적금하였습니다.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하여 월세 및 생활비 지출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외조부가 2023. 2. 8. 재산을 손주들에게 분재할 때, 후보자의 장녀도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저축하였고, 이에 대한 증여세 630,500원을 2023. 5. 21. 납부하였습니다.

2. 장녀의 최근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감안할 때 1억원이 넘는 예금을 가질 수 있는지?

○ 답변 1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21년경 상도동 아파트 전세, 25년도에도 전세 유지), 잠원동 재건축 아파트 배정 이후에도 상도동 전세 유지하는 이유는?

○ 장남이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관계로 상도동 힐스테이트아파트의 전세를 갱신하지 않고 장남의 학교 근처로 가족이 다함께 이사 가기로 하여 2025. 3. 5. 전세보증금 4억, 월세 1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성동구 서울숲삼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중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작구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로 이사간 것인지?

○ 장남이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관계로, 상도동 힐스테이트아파트 전세를 갱신하지 않고 장남의 학교 근처로 가족이 다함께 이사 가기로 하여 2025. 3. 5. 전세보증금 4억, 월세 1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5. 장남이 장녀와는 다르게, 2023.2.10. 성동구 살곶이8길 11, 101호(행당동)으로 전입한 사유는?

○ 장남이 2023. 3.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교 가까운 곳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6. 성동구 행당동 147외 1필지 아파트 월세 계약(임차인 김상환)을 한 사유는?

○ 후보자가 2024. 12. 27. 대법관을 퇴임한 이후에 연금 외에 정기적인 소득은 없었던 반면, 가족의 생활비를 매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반전세 형태의 전세 매물이 일반적이어서, 전세보증금 4억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판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주요 판결 현황 및 내용, 사유

○ 후보자가 주심 대법관으로서 관여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이 기억에 남습니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종래에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한정하여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봐왔던 것과 달리,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로,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혼인파탄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따라 마련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해당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제33조가 명시한 노동3권이 국가권력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의 성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영역의 법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객관적 헌법 가치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과거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양도세/취득세 등 과소 신고한 적 있는지?

○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7 동아아파트 103동 1810호

- 후보자는 2001. 12. 1.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7 동아아파트 103동 1810호를 4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취등록세가 과소 납부되었습니다. 지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한 과소 신고액을 알게 되었고, 그 차액을 기부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청문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2018. 12. 그 차액 상당의 65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9 외 1필지 보람아파트 109동 1008호

-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2. 8. 13.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9 외 1필지 보람아파트 109동 1008호를 매수하고 1992.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거래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워낙 오래 전의 일이라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관공서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2. 1. 5.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9 외 1필지 보람아파트 109동 1008호를 약 9,000만 원(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 등의 자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을 4,9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에 도입되었고, 1가구 1주택이었던 관계로 탈루된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후보자는 지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경위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9. 기소권, 수사권 분리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찰(국수본)의 수사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2023. 3. 23. 2022헌라4), 동 법률의 내용 중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에 대하여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2헌마1370 등).

○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안 내지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법원 등 사법 신뢰 개선을 위한 방안은?

○ 30여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구성원으로서 그에 대한 의견이 없을 리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대법원 등 사법 신뢰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법부에 대한 외부 즉 국민의 시각에 비하여, 저를 비롯하여 법원 내부의 시각은 비교적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좋은 결론을 내는 데 몰두하여 재판에 이르는 절차나 과정의 정의에 둔감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판결의 시기를 급히 당겨 판결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구속 피의자는 체포 후 최장 20일 간 구속수사 후 기소를 하는데, 특정 판사는 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취소 한 바 있음. 이러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후보자의 견해는?

○ 기존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하였던 실무례와 결을 달리하는 결정이기는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견해를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법원이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다는 시중의 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하여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가볍게 바라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왔음을 새기고, 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사건 수 등을 기초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급제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법관 재직 시절부터 재판제도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여 하급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법원을 확대하여 전문적 사건 분야의 재판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변화된 하급심 재판의 모습을 바탕으로, 상고심 구조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등이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6. 배심원제 실질적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법의 기본방향으로서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와 재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주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은?

○ 헌법재판소 후보자로서 사법부의 통제 강화 방안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우나 말씀드리자면,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부 외부의 관점 즉 국민의 관점이 들어와서 사법부 내부의 관점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가 재판제도, 인사제도 개선, 사법정보화 등 사법행정 현안 관련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의·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 등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김건희씨의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사유는?

○ 저는 양삼승 변호사의 글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과 ‘권력, 정의, 판사’라는 책에서 양삼승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용기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더욱이 정의를 말해야 할 때에 말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법조인은 특히 최후의 심판자인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국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희생을 감수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법관으로 일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22. 가장 존경하는 위인과 그 사유는?

○ 지난 4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아계신 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돌아가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애도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 중의 한명입니다. 교황께서는 교황이 되시기 전이나 그 뒤에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다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과 정일우 신부님을 존경합니다.

○ 후보자의 가톨릭 세례명은 이보(Ivo)입니다. 이보 성인(Saint Ivo)은 판사로 일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하여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의 변호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분들의 봉사하고 섬기는 소박한 솔선수범의 삶을 본받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따르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23.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한다(헌법 개정 사항)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합니다.

○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추가하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과정과 그 정신, 특히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헌신적으로 실천한 것이고 이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뚜렷이 기여한 점을 생각하면, 저는 현행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에 관한 내용처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24.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 임기 등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라는 점에서, 개헌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개헌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후보자는 헌법 재판(결정문)에 있어 소수의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가 넓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헌법과 법률의 해석 적용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경험과 철학 내지 가치관에 따라 다른 입장과 관점이 제시되고 논쟁이 될 경우 각자의 입장이 보다 보편적인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견은 소수의견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논리적으로 완결되고 다양한 관점을 포섭할 수 있고, 또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 관점을 밝힘으로써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알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의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6.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였는데,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이와 관련하여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4:4의 의견 분포로 기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5. 1. 23. 2024헌나1).

○ 재판관 4인(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은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와 달리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은, 이러한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과 함께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모든 구성원의 소명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위와 같은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염두에 두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충실한 심리와 평의를 거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충실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식견들을 경청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가짐, 헌법재판소가 부여받은 위와 같은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각종 선고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계획인지?

○ 헌법재판관이 재판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한 각종 이익집단, 여론, 언론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관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사자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켜, 그 어떠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부 관점에 편향되지 않은 채 상정 가능한 이론적 관점을 풍부하게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 넓게 경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29. 현재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사회 통합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기반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축적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헌법의 역할, 관련 헌법 개정 필요사항 등 헌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2020헌마389등 사건에서,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환경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충실히 심리하여 내려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심사 등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 한국형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음.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위협할 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과 조치를 통해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는지?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헌재 2025. 4. 4. 2024헌나8).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어려운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된 심판절차를 통하여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결론을 내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많은 국민들에게 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의견 대립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 한편,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2024헌마1109 등 다수)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 질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질의도 위 사건에서 다루어질 중요 쟁점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원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도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통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헌법을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4. 사법의 정치화 우려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30여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구성원으로서 그에 대한 의견이 없을 리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제가 법원의 신뢰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법부에 대한 외부 즉 국민의 시각에 비하여, 저를 비롯하여 법원 내부의 시각은 비교적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좋은 결론을 내는 데 몰두하여 재판에 이르는 절차나 과정의 정의에 둔감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5.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재판관의 자격은 법관의 자격과 연동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도입과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지닌 법조인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화된 법조인들 가운데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의 구성 또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성별, 나이,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6.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판사의 정년은 65세, 검사의 정년은 63세인데,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은 검사나 판사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 헌법재판의 일관성·신중성·효율성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연장된다면,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숙련된 연구 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어 헌법재판의 수준 제고와 신속한 사건 처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한 인재의 영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7. 후보자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와 해결해야 할 일은?

○ 사법의 영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의 삶 속에서 헌법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소명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 법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혼인파탄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따라 마련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해당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제33조가 명시한 노동3권이 국가권력의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의 성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영역의 법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객관적 헌법 가치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종래에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한정하여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봐왔던 것과 달리,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로,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9.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반드시 추진할 과제와 목표는?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역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국민적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관련 연구와 논의를 검토하는 등 많은 고민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 교육, 토론 등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헌법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통해 이러한 시민의 참여 의지에 부응한다면,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0. 헌재와 대법원이 최종 법률 해석권을 놓고 다른 견해를 내놓거나 갈등을 겪을 경우, 해결할 방안은?

○ 우리 헌법과 법률은 법원에 대하여 명령·규칙 및 처분의 위헌심사권 및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 등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 기능과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만,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 존중하는 노력을 하여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헌법소송이 지연될 때 국민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은?

○ 헌법재판의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적 이론 및 국내외 자료와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념, 가치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다만, 중요 사건의 선고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인력 편성과 재판절차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구부 및 사무처에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집중심리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사건 처리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은?

○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사건 중에는 정치적 성격을 띠거나,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더라도, 헌법재판은 헌법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 정치적 고려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 사건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뉠 수는 있으나, 이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와 관점을 깊이 고민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입장은?

○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2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司法的)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모두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사자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켜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부 관점에 편향되지 않은 채 이론적 관점을 풍부하게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 넓게 경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4.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은?

○ 대법원장은 국회, 대통령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 정책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분립된 입법, 행정, 사법부에 각기 균등하게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깊이 있는 헌법해석과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의 헌법적 정당성 수준을 높이기 전까지, 이러한 헌법 취지를 구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속력 및 실효성 문제는?

○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다만,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그것이 법률의 위헌결정인지 아니면 법원이 한 법률해석의 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이러한 쟁점의 의미와 영향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각자의 입장과 법리를 잘 정립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두 기관 모두 헌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임무를 가진 사법기관이므로, 각자의 헌법과 법률해석을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하여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데에 일치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를 하고,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국가기관의 처분 의무 위반 시 이를 처벌하는 등의 헌법재판소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법치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문제는 형벌의 최후수단성, 권력분립원칙 등과 충돌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6. 재판관 임기와 연임 제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의하여 6년으로 정해져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112조).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 연임에 관하여 개선할 점이 있다면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7. 선거 관련 헌법소송은 정치적 파장이 큰데, 공직선거법 심판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사건 중 특히 선거 관련 사건은 정치적 성격을 띠거나,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더라도, 헌법재판은 헌법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 정치적 고려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 사건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뉠 수는 있으나, 이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와 관점을 깊이 고민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헌법소원 증가로 인해 재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 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사회적 중대 관심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수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숫자는 적은 상황이며, 매년 헌법연구관이 일부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은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사건 심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을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인력들로 충원하여 어려운 사건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판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헌법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본안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리와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인의 헌법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선례가 없는 중차대한 헌법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사안에 심판 역량을 합리적으로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9. 재판관 구성에서 지역·성별 등 다양한 배경이 반영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재판관의 자격은 법관의 자격과 연동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도입과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지닌 법조인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화된 법조인들 가운데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의 구성 또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성별, 나이,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8헌바223 결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상기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8헌바223 결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각급심에서의 재판 기한 및 해당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

○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록과 증거가 방대한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집중심리와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건별로 처리기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

○ 사건별 처리기한의 차이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록과 증거가 방대한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집중심리와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난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위원 탄핵소추 처리 현황

○ 지난 3년간(2023 ~ 2025. 6.) 대통령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접수일	종국일자	종국결과
국무위원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2023.02.09.	2023.07.25.	기각
국무위원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	2024.12.12	2025.04.10.	기각
대통령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2024.12.14	2025.04.04.	인용 (파면)

3-1.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남발하고, 그로 인해 헌법재판소 업무가 불필요하게 과중되는 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대책

○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하는 탄핵제도는 '비상적 수단'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하여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 일부 탄핵 사건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위헌법률심판 제청시 재판이 중지되는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공직 출마 혹은 유지를 위해 악용하는 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책

○ 헌법재판소법 제42조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때에 재판이 정지되게 됩니다.

○ 현행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항소심 재판이 잠정 중단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25헌가12)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추정된 것과 관련해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법원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들을 정지함에 따라, 이러한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거나, 법원이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 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몇몇 헌법소원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밖에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 취지와 목적, 헌법 규정의 체계, 역사적 맥락과 함께 헌법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헌법적 가치 사이의 실제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고,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 및 대통령 임기전 진행중인 재판에의 영향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 논거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밖에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며, 법원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들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 취지와 목적, 헌법 규정의 체계, 역사적 맥락과 함께 헌법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헌법적 가치 사이의 실제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서 다루어질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판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80조는 임기전에 진행중인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그 논거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진행 중이던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들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 취지와 목적, 헌법 규정의 체계, 역사적 맥락과 함께 헌법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헌법적 가치 사이의 실제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헌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판결'이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형사상의 소추'에 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68조 제2항과 헌법 제84조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서 다루어질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년 19명의 청소년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법률이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 논거

○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2020헌마389등 결정에서, 2031년부터 2041년까지 사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과소보호하였으며, 현행법상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중장기적 감축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법률조항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 경로를 보장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명확히 법에 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결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 노란봉투법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면책 요건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노란봉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에서 부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들이 다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국회 내부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통령 취임 전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한 변호인이 새 정부 출범 후 민정 비서관, 법제처장 등 요직에 진출한 보은인사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후보자의 입장

○ 구체적인 임명 경위를 알지 못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재판소원 제도, 이른바 4심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

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은 주택 등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9. 12. 27. 2014헌바381).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보자로서 보다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은?

○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는 매우 첨예한 찬반양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차별의 영역에 놓인 사람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굳건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차별의 영역에 놓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률, 차별받는 이들을 지지하는 내용의 입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14. 방송3법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안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안들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의견

○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재건축초과이익 중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례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된 부과율,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최대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한 부과산정기간,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공제규정의 존재 등을 종합할 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9. 12. 27. 2014헌바381).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보자로서 보다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저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이유를 통해 짐작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30여년간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재판 실무경험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후보자가 생각하는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및 기준은?

○ 판결에 있어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법의 역할,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원리와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법관이 자신의 독자적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양한 법리와 관점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헌법이 정하고 있는 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법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본질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헌법재판소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헌법재판소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비전과 정책 방향성은 무엇인지?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 교육, 토론 등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헌법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통해 이러한 시민의 참여 의지에 부응한다면,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후보자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된 바 있는 사항(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조사를 받았거나, 받았다면 이후 처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최근 법원 일부 판결과 관련해 욕설이 담긴 홍보물, 대법원 앞 근조 화환 배달, 담당 판사의 얼굴을 현수막에 내거는 등 법관 대상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사례가 다수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현상이 벌어져 오래 법원에 몸 담았던 입장에서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차분한 평가에 앞서 각자의 입장에 감정적으로 치우쳐 극단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재판에 관여한 모든 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제하는 문화가 사회적 토론을 거쳐 정립되길 희망합니다.

6. 법원행정처 국정감사 당시 외부 경력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된 인사의 채용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탄원서 작성 및 전과 이력)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인사에 관여했다고 답변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 조치 및 처분이 있었는지?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 제3항 및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및 제24조의2,「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채용됩니다.

○ 질의하신 재판연구관도 통상적인 시험 공고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에 참여한 인사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해당 사항은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후보자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외부 경력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채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 채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양심’은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아닌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양심’입니다. 즉 법관 개인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는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선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원리와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동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성실하고 진중한 자세를 지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헌법재판관 다양성 부족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재판관의 자격은 법관의 자격과 연동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도입과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지닌 법조인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화된 법조인들 가운데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의 구성 또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성별, 나이,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후보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법관 탄핵 이슈 관련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받아야 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해당 명제의 대상에 대통령에도 해당되는지?

○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하는 것(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0.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 규정 관련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대통령과 관련한 다수 재판 중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밖에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며, 법원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들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 취지와 목적, 헌법 규정의 체계, 역사적 맥락과 함께 헌법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헌법적 가치 사이의 실제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서 다루어질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법관 증원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사건 수 등을 기초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급제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법관 재직 시절부터 재판제도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여 하급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법원을 확대하여 전문적 사건 분야의 재판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변화된 하급심 재판의 모습을 바탕으로, 상고심 구조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등이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2. 대법관 비법조인 임용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최근 국회에서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대법관 임용자격을 비법조인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이론과 해석에 관한 지식과 식견, 인권과 사회에 대한 철학을 가진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법조인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3. 대법원의 판결에 헌법 소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4심제 도입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 일체(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8헌바223 결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판결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 헌법 제103조에 의해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합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7.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 관련해, 판결 합의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 후보자 대법관 시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당선무효형 하급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8헌바223 결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것은 정책공약을 매개로 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과 공론의 장을 열어 선거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형성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특정 의사 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

서는 그 전제로서 문제된 표현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는 개별 법률 조항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법원 내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념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겠지만 법관들도 자신의 일, 재판을 잘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적용될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하여 자기 재판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법원에 법관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이 있으나 이는 법관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연구하는 학술단체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0.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추천)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편향성 및 이해 관계 작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 등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분립된 입법, 행정, 사법부에 각기 균등하게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깊이 있는 헌법해석과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재판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헌법재판관 스스로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하며, 추천 등 어떠한 이유로든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킴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것이 헌법적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관하여 직무감찰을 시행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감사원이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5. 2. 27. 2023헌라5).

○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보자로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하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및 역량 3가지

○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과 함께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모든 구성원의 소명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위와 같은 소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염두에 두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가 충실한 심리와 평의를 거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충실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식견들을 경청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가짐, 헌법재판소가 부여받은 위와 같은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다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이 있다면?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 교육, 토론 등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헌법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통해 이러한 시민의 참여 의지에 부응한다면,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후보자의 신념 또는 좌우명

○ 후보자의 좌우명은 회인(懷人, 懷仁)입니다. 품을 회(懷)에 사람 인(人) 또는 어질 인(仁)으로, 살아오면서 늘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고 품으려고 노력했으며 덕을 쌓고 어진 것을 가까이 하는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4. 후보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장·단점

○ 장점

- 저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군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저의 법조경력은 현행 헌법의 시행시기와 겹칩니다. 현행 헌법이 어떤 경위로 개정되었으며, 특히 현행 헌법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지켜보고 체감하여 왔던 법조세대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으로 4년간 파견 근무를 하며 헌법재판업무를 보좌하면서, 헌법가치의 실현에 관하여 깊이 탐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달리 살아 온 사람들의 처지에 공감하려는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하여왔고, 다른 삶과 사회적 지위에서 나온 낯선 생각과 관점에 대하여도 정면으로 바라보고 경청하고자 하여 왔습니다.
- 재판업무를 주로 하여 온 이른바 정통법관으로서 보수적인 법관직무윤리에 익숙하고,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면서는 보다 사법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보다 폭넓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단점

- 법관으로서 사회생활을 해옴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에 여전히 부족할 수가 있으므로, 늘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에 정성을 쏟겠습니다.

5. 판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법조인은 사회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가르침과 조언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살아보고자 법조인, 그 중 법관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6. 법관으로서 기억에 남는 판결이나 재판은?

○ 후보자가 주심 대법관으로서 관여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이 기억에 남습니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종래에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한정하여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봐왔던 것과 달리,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로,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혼인파탄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요건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국민이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장 모범상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굳건한 믿음을 두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장의 모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8. 헌법재판소장이 되고자 하는 또는 되어야 하는 까닭

○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30여 년간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재판 실무경험을 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하면서, 헌법이 최고의 재판규범으로 실제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방법론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후 재판 현장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나름 일관되게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살리고자 합니다.

○ 법원행정처장으로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구성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현안들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 경험 역시 살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화합과 역량 발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하여 왔더라도 한 사람이 가지는 경험의 한계를 잊지 않고,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9.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과 존경하는 인물은? 이유는 무엇인가?

○ 저는 양삼승 변호사의 글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과 '권력, 정의, 판사'라는 책에서 양삼승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용기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더욱이 정의를 말해야 할 때에 말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법조인은 특히 최후의 심판자인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국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희생을 감수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법관으로 일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 지난 4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아계신 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돌아가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애도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 중의 한명입니다. 교황께서는 교황이 되시기 전이나 그 뒤에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다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과 정일우 신부님을 존경합니다.

○ 후보자의 가톨릭 세례명은 이보(Ivo)입니다. 이보 성인(Saint Ivo)은 판사로 일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하여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의 변호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분들의 봉사하고 섬기는 소박한 솔선수범의 삶을 본받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따르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10.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국적 및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 소장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는지?

○ 특별히 예상이 되는 기관이나 개인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12. 인사청문회 준비팀 명단(소속기관, 직급, 연락처, 담당업무, 외부 파견자 별도 표시)

○ 답변팀: 헌법연구관 2명

소속	직급	성명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한별
	헌법연구관	이종훈

○ 행정지원팀: 재정기획과장 등 4명

소속	직급(직책)	성명	연락처
헌법재판소	부이사관(재정기획과장)	박재은	02-708-3423
	법원서기관	이석준	02-708-3425
	행정주사	강소라	02-708-3427
	행정주사보	김남호	02-708-3430

13. 사형제 존폐에 대한 견해는? (상세히)

○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찬반양론이 있어 왔고, 현재 세계 각국의 입법례도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극악한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현재도 헌법소원심판사건(2019헌바59)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는 매우 첨예한 찬반양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차별의 영역에 놓인 사람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굳건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차별의 영역에 놓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률, 차별받는 이들을 지지하는 내용의 입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15.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는? 제도화에 대한 견해는?

○ 법률이나 판결을 통해 동성혼을 인정하거나 동성파트너를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성애는 사적인 영역에서 인간이 가지는 내밀한 성적 지향에 관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과 태도는, 그들도 고유한 인격을 실현하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동성혼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다수의 동성혼 사건이 심리 중에 있으므로(2025헌바133 등),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많이 중용되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 법원 안에는 판사들이 재판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잘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기 위해 만든 다수의 연구회가 있고, 이러한 연구회는 기본적으로 실무의 내용과 학술연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연구회 중에는 다수의 법관이 소속되어 규모가 큰 연구회도 있고, 여러 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법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통적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는 연구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7.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판결의 객관성 등을 의심받음. 특정 사단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며 법원 조직의 정치화 라는 말까지 들음.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식하며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8. 헌법가치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것과, 이를 통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폭넓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9. 후보자 스스로 판단하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은?

○ 후보자는 30여년간 법관으로 늘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평가자에 따라서는 제가 법관으로 일하면서 한 판결 중 보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진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에 임해 왔고 이러한 저의 생각과 재판이 진보나 보수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되면,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탄핵소추권이 가지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하여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헌법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수호를 위한 역할을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21.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하는 탄핵제도는 '비상적 수단'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하여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 일부 탄핵 사건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1987년 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후보자의 입장은?

○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라는 점에서, 개헌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개헌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현재 헌법재판관는 부패 비위 의혹에 연루되더라도 징계규정이 없음. 헌법재판관 징계법안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에게는 높은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이 요구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다만, 징계절차의 도입 여부와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형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가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재판관의 독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제도화 여부 및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4. 헌법재판소에 장기 미제 사건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는 지적.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음. 사건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 및 대책은?

○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 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사회적 중대 관심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수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숫자는 적은 상황이며, 매년 헌법연구관이 일부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은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건 심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을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인력들로 충원하여 어려운 사건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판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헌법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본안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리와 판단을 거치

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인의 헌법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선례가 없는 중차대한 헌법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사안에 심판 역량을 합리적으로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5.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지만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 소장의 임기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의하여 6년으로 정해져 있고(헌법 제112조),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임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 임명시 재판소장 임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성, 위상,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해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1. '재판소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여전히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지?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더욱더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6-2. 헌재가 2012년 12월 정부 외부기관 위촉위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법률 해석도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헌재소장후보자로서 이 전에 밝힌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제한 것과 다르지 않다",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결정은 결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 이와 같은 입장과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그것이 법률의 위헌결정인지 아니면 법원이 한 법률해석의 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이러한 쟁점의 의미와 영향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각자의 입장과 법리를 잘 정립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두 기관 모두 헌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임무를 가진 사법기관이므로, 각자의 헌법과 법률해석을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하여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데에 일치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를 하고,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한정위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

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가 서로 다르고, 접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의 여러 한정위헌 결정 중 어떤 것은 법률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이지만, 어떤 것은 개별적인 법률해석의 시정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에 언급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만약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한정위헌 관련 사건들의 연구보고서와 학계의 논의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7.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목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저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이유를 통해 짐작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30여 년 간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재판 실무경험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논란이 됐고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음. 과거 일이긴 하나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 후보자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29. 헌재는 1997년과 2022년(2차례) 등 총 세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음. 헌재가 특정 법 조항 해석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그 해석을 근거로 판결했다는 이유였음. 그때마다 대법원은 "법원 권한에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음.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관련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그것이 법률의 위헌결정인지 아니면 법원이 한 법률해석의 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이러한 쟁점의 의미와 영향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각자의 입장과 법리를 잘 정립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두 기관 모두 헌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임무를 가진 사법기관이므로, 각자의 헌법과 법률해석을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하여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데에 일치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를 하고,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한정위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가 서로 다르고, 접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의 여러 한정위

헌 결정 중 어떤 것은 법률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이지만, 어떤 것은 개별적인 법률해석의 시정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에 언급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만약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한정위헌 관련 사건들의 연구보고서와 학계의 논의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0. 과거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되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부 장악' 논란,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연구회 탈퇴한 게 사실인지? 그게 아니라면 탈퇴한 이유는 무엇인지?

○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커뮤니티 관련 정책 결정의 공정성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탈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1.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냄. 일각에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가 있음. 이재명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 후보자의 생각은?

○ 사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관은 오직 사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헌법과 법률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식하고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 사건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 및 대책은?

○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 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사회적 중대 관심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수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숫자는 적은 상황이며, 매년 헌법연구관이 일부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은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건 심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을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인력들로 충원하여 어려운 사건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판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헌법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본안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리와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인의 헌법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선례가 없는 중차대한 헌법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사안에 심판 역량을 합리적으로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3. 헌법에 의거하면 건국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 현행헌법 전문에는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고,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같은 헌법 전문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로 삼으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며,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의 법통을 계승하여, 한일 병합의 불법성을 전제로 독립국가의 법적·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임시정부수립은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제 정부를 조직하고 주권이 민중에게 있음을 밝혀,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의 총의에 입각한 건국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역사적 연속성과 법통의 계승, 민족 주권과 독립의지라는 점에서 임시정부수립일이 우리나라의 건국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4.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2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司法的)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모두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사자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켜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부 관점에 편향되지 않은 채 이론적 관점을 풍부하게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 넓게 경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35. 법관으로서 신념에 가려져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함. 후보자는 이를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 개인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의 의미를 가볍게 여겨 재판한다면 이는 곧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그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 의하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습니다.

○ 다양한 법리와 관점들이 치열하게 교환되고 토론되어야 좋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한 채 그저 사안이 주는, 그 주장이 주는 무게감을 정밀하게 저울질하는 것이 재판 기본적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 등을 생각하면, 공개 변론 등 심리의 내용이 투명하고 깊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의 또한 9명의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명의 재판관이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고집을 관철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36.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반복적으로 신청해 재판부의 판결을 지연하려했다는 지적을 받았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는지?

○ 그 경위를 정확히 몰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7. 위헌법률을 발의해서 국민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입법부에 대해 사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판결).

○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입법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이러한 형사처벌의 도입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 후보자가 생각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것과, 이를 통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폭넓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39.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헌법적 보호를 해야하는지?

○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해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헌법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정당해산의 심판을 맡도록 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정당이 해산될 수 없도록 이를 보호하되,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 비로소 그 정당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정당해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2013헌다1).

40.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의 실현이 안된 경우 사법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은?

○ 재판지연이 사법신뢰에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위원임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재판지연의 이유와 경위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 그에 대한 제재적 책임을 규정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재판지연의 발생 가능성을 보다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법관과 법정 수의 과감한 확대 정책을 입법으로 결정하여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41.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법원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한 견해는

○ 형사재판 진행 중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한 사안에서,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재판진행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개별적인 판단에 대하여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헌법상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밖에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며, 법원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들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 취지와 목적, 헌법 규정의 체계, 역사적 맥락과 함께 헌법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헌법적 가치 사이의 실제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서 다루어질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인 탄핵소추를 남발할 경우 이에 대한 생각은?

○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하는 탄핵제도는 '비상적 수단'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하여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 일부 탄핵 사건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위헌여부?

○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관련된 재판, 교육, 토론 등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헌법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통해 이러한 시민의 참여 의지에 부응한다면,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공직자 재임기간 동안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일 3가지

○ 합의부 재판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부 판사, 재판연구원, 참여관, 실무관 등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성실히 일하여 합리적인 재판 진행과 판결로 이어지게 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3. 공직자 재임기간 동안 가장 아쉽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 3가지

○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책 등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반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기라 재판지연 현상이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 법원행정처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국회와 재야의 지적을 받고 있었던 터라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실효적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4. 지명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은?

○ 저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이유를 통해 짐작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30여년간 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하며 헌법재판 실무경험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5. 공직자, 정치인 중 친분이 있거나 자주 교류하는 인물은?

○ 특별히 언급할 만한 분은 없습니다.

6. 법관으로 재직하며 본인이 가장 존경했거나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법관은?

○ 김능환 전 대법관을 존경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인 김능환 전 대법관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사건에 쏟는 열정과 고민, 노력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겸손하고 따뜻한 배려 등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법관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 김효종 전 헌법재판관을 존경합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에 처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나올 당시 낯설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는 제가 소박하지만 제 나름의 헌법적 관점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따듯한 배려와 사랑으로 어떻게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서로를 위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이유와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 30여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구성원으로서 그에 대한 의견이 없을 리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제가 법원의 신뢰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법부에 대한 외부 즉 국민의 시각에 비하여, 저를 비롯하여 법원 내부의 시각은 비교적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좋은 결론을 내는 데 몰두하여 재판에 이르는 절차나 과정의 정의에 둔감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도적으로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심급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심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충분한 사실인정 심리가 가능하도록, 1심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전문법원을 확대·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1심 재판의 모습을 바탕으로, 2심과 상급심 제도의 변화 방향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법관으로 재직하며 본인의 과오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 경위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유는?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법관으로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를 평가한다면?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10. 법원 재직시 모임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모임에서 활동했는지?

○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법원 내 연구회에서 활동하였고,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모든 연구회와 커뮤니티에서 탈퇴하였습니다.

- 헌법연구회는 설립 당시인 2006년경에 가입하였습니다.
- 형사법연구회는 2010년경 가입하였습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4. 11.경 가입하였습니다.
- 노동법분야연구회는 제가 서울고등법원의 노동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보임된 이후인 2016. 3.경 가입하였습니다.
- 그 밖에 법원 내 가사소년재판부커뮤니티와 민사재판커뮤니티에 가입하였습니다.

11. 사법부 내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소위 사법부 코드화, 편향성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겠지만 판사들도 자신의 일, 재판을 잘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적용될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하여 자기 재판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법원에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이 있으나 이는 판사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연구하는 학술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이라 일컫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내용, 사상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해당 모임 판사들의 활동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법원에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이 있으나 이는 판사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연구하는 학술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

○ 법원의 특정 연구회의 해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4. 일부 현직 법관들의 정치 편향적 행보에 대한 입장은?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원 판단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5. 2017년 오현석 판사(당시 인천지법,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전산망에 “재판은 정치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음. 위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특정인의 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법원행정처장 당시 법사위 위원님의 같은 취지 질의에 대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의 외관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6.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법부의 판단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에 부응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각자의 재판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사법부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는?

○ 법관과 재판관 등 사법부의 구성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가 각종 이익집단이나 압력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원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는 한편,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폭 넓게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사법부의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8. 법관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양심’은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아닌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양심’입니다. 즉 법관 개인의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이 어떤 정치적 이념에 편향돼서는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법리와 관점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부당한 영향에서 초연하여 스스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한 채 그저 사안이 주는, 그 주장이 주는 무게감을 정밀하게 저울질하는 것이 법관의 기본적 덕목이라 생각하고 이에 부합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19. 후보자 본인 관련 사건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전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유였는지?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 판결 선고까지 기간이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히고, 사건 계류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법원은 재판을 하는 기관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과제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듯이 신속한 재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계류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2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진행을 정지하였고, 이러한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거나, 법원이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한 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몇몇 헌법소원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고, 이 사안은 법원 재판부의 개별적인 판단과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후보자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밖에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며, 법원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들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 취지와 목적, 헌법 규정의 체계, 역사적 맥락과 함께 헌법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헌법적 가치 사이의 실제적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서 다루어질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견해는?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헌법 개정 사항인지(개헌론)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입법론)에 관하여는, 법조 영역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 개헌론이 그동안 후보자의 개인적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에서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혹은 최고 법원의 지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쟁점으로만 좁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평소 법원 재판의 심급제도가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 법원(1심 법원)을 양(판사수의 확대)과 질(전문법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을 하여 왔습니다.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기초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관 수의 확대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 결정하면 보다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장점은, 양 기관의 헌법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4심급 제도로 작동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큰 틀에서 저의 생각입니다.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 더욱더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4.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입장은?

○ 재판소원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법원, 학계의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관련 연구와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더 나은 헌법재판을 위한 개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재판소원 제도가 남발될 시 헌재 인력 대비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재판소원 제도가 남발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 여부만을 기준으로 도입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만약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재판소원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신중한 제도 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상 중요한 원칙이나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경우에 한하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 사건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이러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27.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특활비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이를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적절한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다른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용도가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지난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이 이번 추경을 통해 부활됨. 필요없다던 예산을 다시 부활시킨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편성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노란봉투법 관련 내용과 과거 헌재의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면책 요건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노란봉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에서 부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들이 다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안의 입법절차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2023헌라3).

○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방송3법 관련 내용과 과거 헌재의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 3. 21. 국회의장에게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이른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2023. 4. 27.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후 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3. 10. 26. 2023헌라2).

○ 방송3법은 2023. 11. 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12. 1. 국회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고, 12. 8. 재투표 결과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후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하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안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안들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1. 헌법재판소 내 헌법연구관 공석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은?

○ 매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심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 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사회적 중대 관심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수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숫자는 적은 상황이며, 매년 헌법연구관이 일부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은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건 심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을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인력들로 충원하여 어려운 사건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판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국무위원 탄핵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헌재 2024. 8. 29. 2023헌나4 등 참조).

33.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하는 탄핵제도는 '비상적 수단'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하여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로는 행정안정부장관 이상민 탄핵(2023헌나1),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2024헌나6),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2024헌나9)이 있었고,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 일부 탄핵 사건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 검찰개혁 4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장기미제 사건 해소를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 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더하여 사회적 중대 관심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수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숫자는 적은 상황이며, 매년 헌법연구관이 일부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은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사건 심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을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인력들로 충원하여 어려운 사건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판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아가 헌법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본안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리와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인의 헌법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선례가 없는 중차대한 헌법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사안에 심판 역량을 합리적으로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6. 간첩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행 형법은 제98조에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및 유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한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정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재 논의되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규율하는 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매우 첨예한 찬반양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39.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동성애 인정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동성애는 사적인 영역에서 인간이 가지는 내밀한 성적 지향에 관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과 태도는, 그들도 고유한 인격을 실현하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므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판결에 대하여 국회의원 5인이 2024. 10. 17. 법률안 제출권 및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사건이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4헌라5).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계획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헌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제11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제10조).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여성과 남성간의 구조적 성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여성가족부의 개편 여부에 관한 정책적 결정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의견은?

○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헌재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결정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소위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고, 국회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용하고, 국회의장의 법률에 대한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으므로 권한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2헌라2등).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게 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발의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법안과 관련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통일부의 명칭을 '한반도부' 등으로 변경하여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명칭 변경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숙지하지도 못하였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다른 행정부처의 명칭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통일부 명칭 변경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배치되지 않는지?

○ 최근 통일부의 명칭을 '한반도부' 등으로 변경하여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명칭 변경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숙지하지도 못하였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다른 행정부처의 명칭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2017헌바127).

○ 이 결정에서는 의견이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재판관 4인(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은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위헌인 것은 아니지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의견을 제시하였고, 재판관 3인(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은 임신 제1삼분기(대략 임신 14주 무렵까지)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재판관 2인(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종석)은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 등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을 합헌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저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며, 후보자로서 위 결정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인 2020. 12. 31.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여 낙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그에 관한 합법적인 의료지원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뜻을 모아 입법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47.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17번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은 대통령이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 대법원장은 국회, 대통령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정책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분립된 입법, 행정, 사법부에 각기 균등하게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깊이 있는 헌법해석과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의 헌법적 정당성 수준을 높이기 전까지, 이러한 헌법 취지를 구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해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러한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법관에게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징계의 일환으로 해임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고려하고, 여러 사례에 대한 검토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여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 이민청 신설에 대한 견해는?

○ 이민청은 인구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과 사회·문화적 충돌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관련 연구와 논의를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선거철 출마를 겨냥해 사표를 내고 정당으로 직행하는 검사들 때문에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몇 년간, 현직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곧바로 특정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른바 '법복정치인' 논란을 불러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52. 국민의 사법부 불신 및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재판이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상 사건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53.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판결문은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전체의 1%도 채 안 돼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 제109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판결문 공개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54.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 및 제재로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최후의 단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중하게 여기는 편에 속합니다. 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소년법의 입법취지와 각국 소년형사법제도의 태도도, 개인적으로 1년간 소년재판을 하였던 경험도,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형사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육하고 그를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의 변화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과 다른 모든 교육기관 등이 모두 힘을 합하여 함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소년범죄의 피해자 역시 소년인 경우가 많고 여러 면에서 취약한 심리적 상황 등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년들의 성장 속도, 학업 단계(만 13세 전후 중학교 입학), 소년범죄 발생 비율의 증가 현상 및 흉포화 경향 등을 고려하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은 입법정책면에서 도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5. 사형제도 존폐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찬반양론이 있어 왔고, 현재 세계 각국의 입법례도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극악한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현재도 헌법소원심판사건(2019헌바59)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합숙하여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117등).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합숙하여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117등).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해마다 차이를 보이며,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법관들 사이에 양형 편차가 있어 사법신뢰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왔는바, 이를 통하여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줄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 실무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9. 강력범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형'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바 후보자는 현재 양형기준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 법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편 일부 감경요인이 피해자의 용서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반성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 법관의 작량감경을 전제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처벌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그러한 지적들에 대해 동의하며 양형조사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양형심리의 충실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0. 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신청·재판장고발 등 간첩사건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특정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

○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체제를 조직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지위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62. 이적단체에서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수차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안보사범이 현역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원내에 진입하려는 시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구체적 사안을 잘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한다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를 맡도록 하여 이른바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미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별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해석을 내린다면?

○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고, 제가 대법관 임기를 마친 이후에 접수되어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헌법재판소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2020헌마1724등).

○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 현재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 추진 방향은?

○ 헌법재판소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2020헌마1724등).

○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고, 현재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조희대 대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사적(학연, 지연 등 친목 모임 등), 공적인연은 어떠한가?

○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대법원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고, 다른 분들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습니다.

68. 헌법연구관 재직 당시, 좌파 성향의 연구관들이 졸속 재판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 저 역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사건을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본질적인 헌법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69.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한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 공수처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습니다.

70. 대통령실이 임명하고자 했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강력히 반대한데 대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 69번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특정 성향을 가진 연구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된 심판절차를 거쳐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방식 및 헌법재판관의 독립, 헌법연구관의 역할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헌법연구관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72.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된 직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한 데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커뮤니티 관련 정책 결정의 공정성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탈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3.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 산하의 공식적인 연구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법원에 여러 가지 연구 모임이 있으나 이는 판사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연구하는 학술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중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 전반의 효율성과 운영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7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4번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이해충돌'의 정의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는 '이해충돌'의 정의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7. 대통령 사면권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면권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사면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8. 대법관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하급심 1심 판사 증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사건 수 등을 기초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급제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법관 재직 시절부터 재판제도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급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하여 하급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법원을 확대하여 전문적 사건 분야의 재판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변화된 하급심 재판의 모습을 바탕으로, 상고심 구조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등이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79.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등용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78번 답변과 같이 변화된 하급심 재판의 모습을 바탕으로, 상고심 구조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비법조인 대법관의 등용 등이 같이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80. 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자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청문회의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특별검사 제도는 보충적·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별검사법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사대상의 범위 등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재 2017헌바196).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특정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후보자는 재판을 담당하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 허가한 사실이 있다면 당시 어떤 사유로 공조장 변경을 허가했는지?(대표사례 5가지)

○ 30여년의 법관 생활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83.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수사와 기소의 통합과 분리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지는 충분한 공론화와 검토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84. 향후 노조와의 갈등 발생 시 후보자의 대처 방안은?

○ 신뢰 형성을 위해 평소에도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5. 헌법 개정 시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분립된 입법, 행정, 사법부에 각기 균등하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인적구성의 다양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9인의 임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개헌사항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6.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 전관예우의 문제는 법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는, 재판을 하는 법원이 주로 실천하여야 할 과제가 있기도 하지만 법원 밖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와 제도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재판당사자의 눈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반대 당사자에게 치우진 진행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 자체로 이후의 재판결론의 정당성의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① 우선 법원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었던 회피, 기피 제도나 연고관계 재배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절차진행의 공정성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부당 변론에 대한 철저한 배척), 최종 판결에서도 논증을 충실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여 언제든지 비평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② 전관변호사의 배출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문제, 변호사 선임 경쟁을 줄이는 문제, 전관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수임된 사건의 내역을 공개하는 문제 등은 법관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연고의 힘을 크게 신뢰하는 연고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입장에서는 재판부와의 연고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연고주의가 작동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7. 학계에서는 논문 표절률이 20% 이상이면 표절 의혹을 두고 있음. 논문 표절률이 45%인 교수가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국무위원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청문회의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하지 못한 채 국무위원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청문회의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과거 질병관리 분야 총책임자의 배우자가 코로나19 당시 손 소독제와 마스크업체 주식을 다수 거래했을 경우 이해충돌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없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청문회의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농업계획서 허위 제출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불법증축 영업을 한 사람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청문회의 대상자인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헌법재판소가 폐쇄적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장으로서 헌재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열린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야 할 쟁점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설득력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 최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소장으로서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2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司法的)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모두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사자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켜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연구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부 관점에 편향되지 않은 채 이론적 관점을 풍부하게 검토하고, 심판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폭 넓게 경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3. 헌재 결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구상 중이십니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면 헌법의 해석·적용에 일관성이 유지되므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선례와 이론을 통해 검증되고 확립된 법리는 결정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연구 및 재판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장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연구 및 재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관련 연구와 논의를 검토하는 등 많은 고민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력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여야 할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심리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